

2023년

학술대회

자료집



호남의 향약자료

성과공유와

연구심화



일시: 2023년 11월 10일 (금) 10:00 ~ 17:00

장소: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1층 세미나실



재단
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HONAM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식순

1. 사업소개(권수용)

2. 논문발표

1) 18세기 순천 사족의 향약 운영과 그 성격(이욱)

2) 18세기초 황익재(黃翼再)의 진휼 활동과 순천 사창·향약의 운영(이행묵)

3) 남원 기지방 입암 촌계의 특징(권수용)

3. 종합토론

좌장 : 김경옥(목포대)

토론자 : 최연숙(한국국학진흥원), 설현지(경북대), 최영희(전남대)

1. 사업성과 공유

2021~2023년 호남지역 향약자료 조사 수량

1. 광주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1	양과동	양과동정향약관	132	동향약 1책, 동계좌목 4책, 시도기 5책, 하기책 6책, 회문 23개, 용하기 3책, 추감기 3책 등
2	부용정	부용정김용규	73	유등곡대동계완의책 1책, 향례합편 2책, 향약활기 1건, 죽곡향약도성 6건 등
3	절골	절골 박종률	6	여씨향약 1책 등.
4	칠석동	광주역사민속박물관	4	보민향약 1책, 광주모성계첩 1책, 의창계안 등
5	광주향교	광주향교	6	광주향좌목 2책 등
6	벽진서원	음성박씨총친회	16	위친계 1책, 수행안 1책, 의열사원적 4책 등
7	가마촌	가마촌마을회관	1	가마촌계안
8	가삼마을	가삼마을회관	7	존모계안 1책, 상부계안 2책, 용친계강신록 2책, 촌계 2건 등
9	도림	도림	4	존모계안 1책, 상부계안 2책 등
10	도림사	도림사	31	
11	명곡	오광고	1	명곡덕후계안 .
12	송산마을	오윤근	2	심신계, 위친계
13	원당영각	원당영각	17	경신제관분정기 1책, 시도기 4책, 원당문중추감기 3건 등
14	성촌	성촌마을회관(성동원)	28	윤림위친계 1책, 금전출납부 관련 자료 15건 등
합계			328	

2. 화순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1	부춘향약	화순군청	14	남일면약안 2책, 부춘면약안 2책, 남일송계안 1책, 부춘면송계안 3책, 부춘면향음례안 등
2	능주향교	능주향교	67	유지계 1책, 흥학계수지부 1책, 흥학계안 1책, 향음례계창설안 등
3	화순향교	화순향교	91	향중약문 1책, 향약좌목 1책, 향약회원명부 등
4	도곡면 덕곡리	덕곡마을	4	덕곡리 노인회 명부회칙 1책, 이정규약 등
4	도곡면 효산리	효산마을	5	모산향약 1책, 위친계 관련 자료 4건

5	도암면 도장리	도장마을	9	설계 1책, 계안 3책, 동안 1책 등
6	도암면 정천리	정천마을	3	정천리 동안 1책, 정천리 대동회의록 등
7	도암면 제정리	제정마을	5	제정 동안 3책, 제정 동계강신안 등
8	동면 경현리	경현마을	4	동계안 1책, 서계안 1책 등
9	사평면 워리	이재규	3	모현동의계안 1책, 상선계안 1책 등
10	사평면 절산리	절동마을	12	추감기 2책, 목청수지부 등
11	이양면 쌍봉리	양승필	1	무상위친계월명단
12	춘양면 공주이씨	이영일	6	동상안 1책, 문계안 1책 등
13	춘양면 산간리	산간마을	1	산간리 동계책
합계			225	

3. 영암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 수	자료 현황
1	영암향교	영암향교	12	모성계안 1책, 청금록 5책, 향월계안 1책 등
2	덕진면 영보리	영보정	40	동헌, 동계, 동계헌, 영보동헌, 녹동서원 청금록 14책, 존양서원 청금록 등
3	덕진면 노송리	송양사(이우당)	36	대문중전여책 1책, 모현계문서 2책, 송양회문서 등
4	신북면 모산리	영팔정	5	동계안, 동계회의록 등
5	영암읍 망호리	망호정	207	회문 46장, 단자 74장, 대동계문서 2책, 동계문서전여책 1책, 동계안 2책, 동중계문서책 등
6	군서면 동구림리	해주최씨 고죽기념관	21	문상부계규약 1책, 문상부계부규약안의록 1책, 전여기 12책, 흘기 1절첩 등
7	영암 죽정서원	죽정서원 박석운 공무원	28	영성재친목계 1책, 간죽정 문중전여기 1책, 화수계 전여기 등
8	영암 회사정	회사정 대동계사	138	동헌 5책, 상계안 2책, 부급안 1책, 회사정제영, 단자문, 강신완의 1장, 상량문 2장, 소지 3장, 간심기 2책, 갑오5월 품목 1장, 영암도 시포전답안 1책, 완의록 2책, 소작료 관련 2책, 추감기 9건, 동계색조분배기 1책, 대동계 전여기 74건, 서호동계전말서 1건

합계			487	
----	--	--	-----	--

4. 장흥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1	부산면	부산경로당	88	부산면안 2권, 장흥부각양교혁절부, 부산면향약계안 4책, 향약회 시도기 16책, 향약계시축 4책, 부산보계안 1책, 어인보회의록 1책 등
2	부산면 기동마을	기동마을회관	7	기동리농기계금전수지부 1책, 동계방채기 1책, 기동노인회안 1책 등
3	부산면 장흥위씨재실	장흥위씨문중	12	운암공파대종계안 3책, 가후계안 1책 등
4	부산면 내안리	내동마을회관	20	동계안 2책, 서계안 1책, 금락계 2책, 향약계음 2책, 상원계안 2책, 화수계안 2책, 돈목계안 등
5	부산면 구룡리	자미마을회관	26	동중대동계책, 서계안 2책, 자복계, 자미동계안 5책, 대동상부계안 등
6	부산면 호계리	호계리문화예술회관 금자리동계안	7	금자리동계안 등
7	부산면 호계리	호계리문화예술회관 호계리동계안	40	대동창계 1책, 대동계안 2책, 호계동안 3책, 동안전장기 1책, 우의계 등
8	부산면 호계리	호계리문화예술회관 용계향약	23	용계면약 1책, 용계면안 3책, 용계면 향약첩 2책, 집강안 3책, 향약수행안 3책 등
9	부산면 성자마을	성자마을회관	1	
10	부산면 용두마을	용두마을회관	14	용두계안 2책, 용두동중수세계안 등
11	부산면 용반리	용반리마을회관	2	대동계규약, 용반리 대동계안
12	부산면 구룡리	임동성(유친계총무)	6	유친계안, 유친계존안, 정사계안, 유친계중수안 등
13	장동면 만년리	만년동마을회관	17	답장기, 만년부흥계규안, 원만년선인계 등
14	용산면 상금리	상금마을회관	25	동계안 1책, 상금리수리계, 동지계안, 화수계문부, 가현문계안 등
15	유치면 등리	유치면사무소	13	오복리동계안 1책, 마정리동계안 1책, 덕산리동계안 1책, 단산리대동계안, 신평2구상포계안, 월등리대동계안 1책 등
16	유치면 등리	남평문씨어은문중	18	무자년추모계안 1책 등

17	장평경로당	장평경로당	30	수강안 1책, 장서면약안 1책, 승노계 1책, 장서면 향약안 3책, 시도기 13책, 장서향약계현 명단부 1책 등
18	용산경로당	용산경로당	51	완의 1책, 남면방약안 4책, 남면면안 6책, 회문 16장, 수행안 6건 등
19	부평향약소	부평향약소	42	부평향약계안 2책, 약계부 3책, 체장안 1책, 시도기 25건, 향약회흥 등
20	방촌유물관	방촌유물관	73	향례합편 2책, 양사계보상기 1책, 문중제장기 4책, 고상옥동향약 1책, 고상면향약계안 1책, 고상면완문 1책, 고하면존성계보상기 1책, 대동계 1책 등
합계			515	

5. 남원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1	남원 금지 입암	마을회관	6	기지입암향약안 1책, 기지암암리개헌 1책, 서암계안, 목청계안 등
2	남원 원 (천)동	남원향토박물관	19	향약좌목, 원천동향약안, 동약중수안, 원천사계안, 원동계안, 용호계안 등
3	남원 입암	박응래씨댁	75	위친계칙 1책, 부부상부계 등
4	남원 용성	남원향교	47	남원군향약서 1책, 존성계 3책, 대방향약계안 1책, 용성향안 8책, 임실향안 2책, 풍헌안 3책, 향임봉천안 3책, 직월안 10책, 유사안 4책, 임사안 2책 등
5	장수 계남	마을회관	27	계남향약 2책, 흥학당 1책 등
6	임실 삼계 정사	임실군청	85	삼계동안 1책, 삼계안 6책, 용하기 8책, 삼강계사계문 5책, 전장기 5책, 동계문서 등
합계			259	

6. 강진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1	강진 낙산	낙산마을회관	130	동계안완의 1책, 동계안 3책, 강신안 86건, 낙산동깃기 5책, 통기 9책 등
2	강진 한림	낙산마을회관	29	한림대동계안 3책, 수리계서류철 등
3	강진 금당	원주이씨 이남철 회장	7	소종계, 대종계시도기, 영사계 등
4	강진 벽송 마을	강진벽송 청주김 씨문중	40	벽송동계, 모선계안, 저두산계안, 검복산계안 등
5	강진 차경	강진 차경사	15	추원계, 청주김씨문안

	동			
6	강진 도암면 향촌	강진 향촌윤씨문중	33	사족계, 영모계, 상목계, 안산계, 대동계, 친목계 등
7	강진	명발당	19	상계(강신안) 1책, 하계(강신안) 2책, 무인추화곡기 1책, 영모계, 회의록, 문우계안 1책 등
8	강진	금강사	25	금강사 모현계안 2책, 수행안 2책, 금강사유림 의연금안, 금강사 전장안, 흘기 등
9	강진	향교	6	금릉사마안 2책, 수행안 1책 등
10	강진군 대구면 수곡문중	대구면 수곡공시성후손문중	59	향약계안 1책, 대동계안 2책, 방약안 2책, 동네계안 3책, 수동리동계 1책, 동계규약 2책 등
12	강진군 대구면 수동	대구면 수동마을회관	42	어촌계 관련 자료
13	강진군 성전면	동령리 마을회관	13	동계안 1책, 가좌전목록 3책, 등
14	강진군 성전면	수암리 마을회관(배진한)	6	수암서계안 1책, 동계안 1책, 강신안 2책 등
15	강진군 성전면	신기리마을회관(이효천)	6	대동계안 2책, 상부계안 2책, 금전출납부 1책 등
16	강진군 성전면	영흥마을회관(임지현)	10	대동계안 3책, 대동계문부 2책, 대동상부계 1책 등
17	강진군 성전면	장등리마을회관(윤재옥)	2	대동계 전곡기, 금전출납부
18	강진군 성전면 대월리	대월리 마을회관	16	리안 4책, 동안 2책, 동계강신부 2책, 대월상부계 등
합계			458	

7. 무안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1	장춘오헌	장춘오헌 임순자	27	석천계 1책, 삼성동계 1책, 성산계 1책 등
2	동일재	동일재 노성욱	9	해제향약 1책 등
3	무안향교	장서각 백용수	1	정인계
4	무안노인회관	회관 강맹기	5	송죽계 1책, 진수계안 1책, 묘성계안 1책 등
합계	4곳		42	

8. 순천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	------	-----------	------	-------

1	광양향교	광양향교	16	광양향약안 2책, 광양군보민향약 2책, 광양군사립계안 등
2	순천시청	순천시청	17	소안면 집강서목 7책, 병오향약계안 1책, 순천부향약계안 1책 등
3	순천향교	순천향교	107	향안 9책, 향집강안 2책, 완문 5책 등
4	여수박물관	여수박물관	45	계강화록 1책, 여수문수동밀양박씨족계안 1책 등
5	여수향교	여수향교	11	여수존성계금원부 1책, 쌍봉면존성계 1책, 율촌면존성계안 1책 등
6	순천 낙안향교	낙안향교 김창기 사무국장	5	
합계			201	

9. 보성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1	복내2리	이리 송계(손육근)	94	송계안 16책, 시도기 2책, 향약계안, 명문, 소지 등
2	복내1리	일리 송계 이창식 총무	6	송계안 3책, 상호계안 3책 포함 총 6건의 자료가 있음.
3	보성향교	보성향교	7	모성계안 1책, 석전계안 4책, 존성계안 2책 등
5	득량도촌	득량 마동길 18 정기홍	5	금도계안 1책, 향약계안 1책 등
6	별교마동	청주양씨 보성 종중 양현수 회 장	16	양씨화수계안 1책 등
7	별교죽전	청주양씨 보성 종중 양현수 회 장	1	동계명록
8	별교구치	청주양씨 보성 종중 양현수 회 장	1	구치부락운영회의록
9	별교신기	청주양씨 보성 종중 양현수 회 장	9	위친계안 3책, 위친계관련자료 6책 등
합계			139	

10. 담양권 향약 조사

연번	조사지역	소장처 및 소장자	자료건수	자료 현황
1	담양 대덕면	대덕면 대성계	2	대성계비 1개, 대성계안 1책

2	담양 대덕면	대덕면 삼성계	1	삼성계비 1개
3	담양 대덕면	대덕면 대흥계	7	대흥계비 1개, 대흥계안 1책, 대흥계 관련 자료 5책 등
4	담양 봉산면 삼지마을	봉산면 삼지마을 위친계	3	지친계안 등
5	담양 담양읍	담양 향교	115	향적 2책, 양사재 접안 1책, 청금록 6책, 별안 3책, 청금수행안 12책, 청금유림안 8책, 향중완의 8책, 향중단자 5책 등
6	담양 고서면 덕촌마을	고서면 덕촌마을	11	동계안 1책, 회의록 2책, 덕촌동계 수입지출 2책 등
7	담양 고서면 잣정마을	고서면 죽림서원	59	관수정계안 1책, 분향리 동정강보계규약 1책, 창녕조씨 보추계안 2책, 시도기 관련자료 23책, 추감기 3책 등
8	담양 고서면	고서면 잣정리	20	갈옥동계 1책, 백동상이계부 1책, 색조부 2책, 추감기 2책 등
합계			218	

※ 전체합계 106곳 3030여건

2. 향약자료 책자 간행



2. 발표 원고

- 1) 18세기 순천 사족의 향약 운영과 그 성격(이욱)
- 2) 18세기초 황익재(黃翼再)의 진휼 활동과 순천 사창·향약의 운영(이행묵)
- 3) 남원 기지방 입암 촌계의 특징(권수용)

18·19세기 순천 사족의 향약 운영과 그 성격

이욱(순천대학교 사학과)

목차

- I. 머리말
- II. 순천의 향약과 민의 부담 경감 노력
- III. 구역 폐단과 동포계 운영
- IV. 순천 향교와 민고 운영
- V. 순천 사족의 진흥 참여
- VI. 맺음말

I. 머리말

1862년 농민항쟁에서 순천 지역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순천의 향쟁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이다. 집결 장소를 나눔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며,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죽창을 지니게 함으로써 조직을 갖추고 행동 통일을 기하는 한편 피아를 구분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지역보다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순천 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령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고 있으나, 관속들을 죽이고 토호와 부민들에 대한 공격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과격하였다. 전임과 현임 이방을 타살하고, 관속들의 상당수가 중상을 입을 정도로 구타당하였다. 특히 공공 건물을 파손하고 공문서 및 공적인 재물을 불태우거나 약탈한 행동은 중앙 정부의 주목을 끈 행동이었다.¹⁾ 5월 18일 「전라감사장계」를 통해 올라온 순천농민항쟁 소식은 철종까지도 경악하게 하였다. 철종은 향리를 구타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살한 것, 민가를 불태운 데 그치지 않고 노략질한 것, 그리고 거리낌 없이 공전을 약탈하고 공해를 부순 사실을 대변과라 인식하고 공권력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사태를 한탄하였다.²⁾ 또한 비변사에서는 공해를 부수고 공전을 약탈한 농민들을 갈수록 난폭해지는 무리들로 판단하고, 이들을 녹림지도, 즉 산적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과격한 농민항쟁 과정에서 순천지역 사족과 농민의 갈등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족이 주도한 향약과 같은 조직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향약은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선적과 악적 운영 방식에서 순창군과 장흥군은 차이가 확인된다. 장흥군은 선과적을 교화책으로 사용하여 과실이 있어도 3번까지 교화의 기회를 주는 반면, 순창군에서는 직접적으로 도덕률을 강제하여 벌을 내리고 재범한 경우 바로 악적에서 제거하고 지역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최고형인 불통수화(不通水火)³⁾를

1) 망원한국사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분과,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2) 『임술록』 5월 28일.

3) 물과 불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교제를 끊는 절교를 의미한다.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약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실천이 장흥군은 매달 강회와 강독, 시험 등을 통해 행해진 반면, 순창군에서는 주로 처벌을 통해 강제되었다. 장흥군에서도 이전에는 주현향약의 향촌 통제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교화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짧은 시기에 거듭되어 시행된 주현향약을 통해 향촌민들을 점진적으로 교육시켜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향촌의 풍속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⁴⁾

순천의 사족은 향약 운영에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⁵⁾ 이러한 노력은 향약에 국한되지 않았다. 동포계, 민고 등의 운영에서도 그러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조선시대 순천의 양반들은 향약과 계의 운영을 통해 민중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민중들의 조세 일부를 분담하였다. 물론 시혜적 입장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경제적 약자인 민중보다 작은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조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 향약이나 계를 결성하고 운영하였다.

이 글은 순천 향약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족들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들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같은 지역 사회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은 공동체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하며,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은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해체라는 현시대의 과제를 풀어갈 단서를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II. 순천의 향약과 민의 부담 경감 노력

순천의 향약 시행은 사족이 자발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다만 18세기 전반 순천부사 황익재가 시행했던 향약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동약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에서, 18세기 이전부터 향약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익재가 시행했던 주현향약은 황익재가 교체되자 바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순천부 사족이 주도한 향약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1796년 조기순, 정환규, 이상엽, 조성순 등 지역의 원로들이 향약을 개설하고 향약재를 세웠다. 그러나 3년이 안돼 시행이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이상엽, 조석근, 허육, 조명부 등이 논의를 통해 조복순을 장의로 한 향약을 운영하였고, 1850년에는 현 한곡리 약촌마을에 향약재를 중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순천부에서는 주로 반촌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지배력과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시도되었다. 이러한 사족의 노력과 함께 순천 부사들이 주도하는 주현 향약 역시 꾸준히 시도되었다. 1829년 부사 이진연에 의해 향약이 정비되었고, 1858~1859년 사이에 다시 시행되었다. 1858년 순천 부사로 부임한 박문현은 순천의 14개 면에 면약을 시행하였다.⁶⁾ 면 단위로 향약을 만들고,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었다. 100~200호 정도의 동을 기본으로 하여, 200호가 넘어갈 경우에는 상계와 하계로, 100호 미만일 경우에는 인근의 동과 합하여 하나의 계가 되도록 조직을 구성하였다. 향약계에서는 선적(善籍)과 악적(樂籍)을 두어 행실의 잘잘못을 규제하였다. 매년 3월과 9월 계장의 집에서 회합을 하였다. 또한 향약 약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각종 재해나 경조사에 부조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담고 있다.

4) 박경하, 「19세기 후반 전남 장흥군 주현향약의 성격」 『월간 주민자치』 131, 2022, 103쪽.

5) 송양섭, 「19세기 사창·사환제 운영과 향촌민의 진흥 참여」 『조선시대사학보』 97, 2021.

6) 이하의 내용은 『순천부향약계안서』(1858)에 의거하였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향약을 추진한 것은 순천 부사였지만, 계장을 비롯한 향약의 임원들은 모두 지역사회의 공론에 따르도록 한 것이었다. 그리고 임원의 2/3 정도가 대민, 즉 양반들이었다. 향약은 당연히 양반 사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였다. 면약의 장인 풍헌을 중민이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양반만이 풍헌을 맡도록 규정한 것이 그 예이다.

이때 시행된 순천의 주현향약은 황익재의 그것과는 달리 관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세의 납부와 잡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역과 같은 부세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에 사망이나 도망 등의 이유로 군역에 결액(闕額)이 발생하면 해당 마을의 이임(里任)이 적당한 자를 물색해 대신 군역을 지도록 하되, 반드시 독약례를 행할 때 보고하도록 하고, 독약례에 참석한 이들은 면임과 함께 공론에 따라 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혹시라도 대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이들이 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 다른 규정에서는, 해당 마을이 잔약해서 대정할 만한 이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마을에서 적절한 인물이 없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군역을 부담하게 하고 실제로는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분담하는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마을이 부유하고 또 군역 부담 가능자들 중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남정이 있는 마을에서 해당 군역 부담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 역시 자의적이거나 해당 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면 전체의 회의를 거쳐 공론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항과 함께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면약의 「입사계조(立社稷)」조에서 자세하고 다르게 있다. 사계 또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계곡(稷谷:穀) 형태의 재원이 있었다. 계곡의 절반은 면내 각리의 호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여 연 30~50%의 이율로 식리 운영토록 하였다. 나머지 반으로는 매년 토지를 사들여 계답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계전과 계답을 운영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면약의 운영 경비와 함께 군역이나 잡역과 관련된 각종 비용에 충당하였다.⁷⁾

이러한 관행은 19세기 중엽에도 계속되었다. 순천 지역에는 향약 조직 예하에 사창(社倉) 형태의 면 단위 곡물 운영이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소라포면에는 남사, 동사, 서사 등 3개의 사창이 확인되는데 각 사에는 각리를 포괄할 보민계(保民稷) 형태의 하부조직이 있었다. 각사는 전체 회의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자체 재원을 통해 마병(馬兵)의 고립(雇立) 등 각종 부세와 잡역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 계의 계수는 역시 순천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가의 일원이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순천의 양반 사족들은 향약 운영을 통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선의에 의한 부조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일반 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각출하여 재원을 만들거나 비슷한 금액의 계전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지출하였다. 그들은 군역에서 면제되었음에도 향약 재원을 군역과 관련된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에 동조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순천의 농민항쟁에서 사족과의 갈등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원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송양섭, 앞의 글, 133쪽.

Ⅲ. 군역 폐단과 동포계 운영

조선후기 군역은 총액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정부 각급 기관의 경비를 헤아려서 군역을 정한 후 각 지방의 인정(人丁)·민총(民總)의 다과와 군역의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각 지방에다 그 액수를 비교적 공정하게 배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배정된 군역세를 그 지방 군역민 전체의 공동 책임하에 수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민이 줄면 군역도 여기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다. 결액(闕額)이 생길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그 면(面)·리민(里民)이 공동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같은 원칙으로 운영되는 군역은 모든 군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될 수는 없었다. 역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세의 징수 기관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특히 후기로 내려올수록 경외(京外)를 막론하고 각급 관아가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외의 보솔(保率)을 사사로이 모집했는데 이것이 역부담의 불균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모속(私募簞)은 일반 군역보다 그 부담이 가벼웠지만, 정규 군역에서 여기로 흡수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머지 부담자들의 할당량은 그만큼 늘어났다.

군역의 총액제 운영 방식은 순천의 입지조건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방식이었다. 1716년 순천부사 황익재의 말에 따르면 순천은 근본적으로 군역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⁸⁾ 우선 순천부 영역 안에 전라 좌수영이 있고, 아울러 방답진, 고돌산진, 목장 등이 있어서 순천의 양인 중에 여기에 소속된 이들이 많았다. 순천의 민호가 호적상 1만 2,000여 호였는데 좌수영 소속 등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많아 순천부에서 수세할 대상자는 6,000호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불과 10여년 뒤인 1729년 편찬된 『신증승평지』에 의하면, 순천의 군역 총액은 1만 5,405명이었다. 총액제적 운영하에서 군정 1인 당 2.5인의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인데 창평에서 49명의 군역이 이정되어 덧붙여졌다. 순천의 민호 총수가 많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순천의 군역 부담은 애초부터 과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여기에 사망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기면 좌수영 소속은 제외하고 순천부 소속 군정으로 대신 충정시키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군역이 더욱 부족했고, 군정 1인 당 부과되는 군포는 가중되었다. 군포 부담이 무거워지면 신분 상승을 통한 군역 면제나 좀더 험한 군역 부담처에 투탁하는 사모속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아있는 군정의 군역부담은 더 늘어났다.

당시 농민들은 실제의 군역을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포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군포는 그 원료가 되는 목화의 풍흉에 따라 가격의 차가 극심하였다. 황익재가 부사로 재임 중에는 흉년이 들어 목화가 귀하였다. 따라서 포목값도 크게 등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를 기화로 관리들은 금년의 것은 물론이고 오래된 것까지 함께 일시에 거두어 폭리를 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군정은 몰락하고 이들의 부담은 족징과 인징으로 전가되었다.

군정과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바로 포목으로 받는 현물납이라는 데에 있었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포목값은 풍흉과 관련하여 크게 변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국가에서 정한 가격인 1 필 2냥의 원칙에 따라 대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농민에게 이익이었지만 수봉시 관리들의 농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포목값이 비싼 흉년만이 아닌 풍년에도 1 필 2냥의 원칙을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군정의 폐단은 군안(軍案)의 개수를 통해서도 자행되었다. 식년마다 관례로 행해지던 군안의 개수는 군졸들에게 고질적인 폐단이었다. 원래 규정이 없었던 까닭에 온갖 농간이 개재되었다.⁹⁾

8) 황익재, 『화재집』 권2, 논읍폐구조.

9) 정진영,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민의 생활」 『순천시사-정치·사회편』, 1997, 499~500쪽.

이상에서 보는 군정의 폐단은 조금의 부라도 축적이 가능하였던 농민들은 신분상승과 여러 방법을 통하여 군역의 대상에서 도피하고, 결국은 의지할 곳이 없는 농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었던 사정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순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고 숙종대부터 군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국 군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한 『양역실총』을 편찬하고 이를 토대로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18세기 말의 군액은 이전의 1만 5,000여 명에서 8,000~9,0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당시 호총은 1만 4,199호(1860, 『여지도서』) 또는 1만 3,669호(1789, 『호구총수』) 또는 1만 3,777호(1792, 『순천부읍지』)였으므로 가호당 1명 정도의 군정을 부담하였던 것 같다. 군포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농민의 부담은 가벼워졌고 농민의 피역과 저항도 다소 진정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정부의 장정수 책정이 급격히 많아짐으로써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또 향리들의 농간과 부민들의 피역으로 면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군액은 많은데 양정은 적은 이른바 ‘군다민소’의 상황이 빚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족징, 인징, 첩징 등의 폐단이 다시 나타났다.¹⁰⁾

이러한 군역 폐단은 양인의 몰락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지역 공동체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순천에서는 일찍부터 군역 부담을 양인에게 전담시키지 않고 면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동포제(洞布制)를 시행하였다. 1801년 처음 시행하였고, 1862년 농민항쟁을 계기로 일부 수정하였다.¹¹⁾ 이때 군역을 면제받는 양반과 중인들은 각각 ‘조공(助公)’과 ‘보관(保官)’, 즉 공적인 부조와 지방관을 돕는다는 명분을, 양인은 ‘균포(均布)’ 즉 군포 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동포제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군역 면제자인 양반의 부담을 적게 하고 상대적으로 일반 양인은 좀더 많이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런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아주 이른 시기부터 순천의 양반이 양인의 부담을 좌시하지 않고 약간의 부담이라도 함께 지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순천의 전통 양반과 일반 양인 혹은 농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표출되지 않은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IV. 순천 향교와 민고 운영

조선시대의 세금 수취는 근본적인 형태로서는 노동력의 징발에 다름 아니었다. 세금을 받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노동 결과인 현물 형태로 받느냐, 아니면 노동력 자체를 징발하여 원하는 현물이나 결과를 얻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전세나 대동세처럼 인간 노동의 결과물인 쌀이나 콩으로 거두며 생선이나 과일과 같은 일상용품 역시 현물 형태로 거두었다. 반면 군역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것은 노동력, 그 자체를 징발하는 것이었다.

납부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면 징발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세나 대동세, 군역이 도로 건설은 같았지만, 생선이나 과일과 같은 일상용품은 달랐다. 즉 정부는 현물 형태로 수납하였지만,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산삼의 경우, 정부에서는 산삼의 형태로 세금을 수납하였지만, 납세자들은 산삼을 채취하는 노동에 징발되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이다. 납부자의 입장에서 노동력을 징발당하는 형태의 세금으로는

10) 김덕진, 「순천의 재정실태」 『순천시사-정치·사회편』, 1997, 384~386쪽.

11) 『黃田面洞布厘正節目』

군역을 비롯한 신역(身役), 그리고 공물과 진상, 요역(잡역) 등이 있었다.

요역 또는 잡역은 토지가 기준이 되어, 토지 8결 당 1명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방식이었다. 공물과 진상은 인간 노동력을 징발하되 그 부과 기준이 가호(家戶)였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노동력을 징발하는 세금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는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그 댓가를 지급하는 형식, 즉 고립제(雇立制)가 일반화되어갔다.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잡역이나 공물, 진상의 수취 방식에 변화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노동의 고립제가 일반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요역 제공자(요역 부담자)와 정부가 원하는 노동 결과물 제공자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원래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던 요역 부담자에게는 노동력 대신 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는 재화(쌀이나 면포 등)를 납부받고, 정부가 원하는 노동결과물(도로나 지방 관청의 생필품 등)은 납부자로부터 받은 재화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즉 부담자의 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잡역에서 세금을 바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잡역이 잡역세가 된 것이다.

잡역이 잡역세로 바뀌면서 민의 부담은 커져갔다. 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잡역세 운영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기금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여 잡역세를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민고였다. 민고를 설립하고 그 수입으로 진상 등의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었다.¹²⁾

순천에서는 17세기 중엽에 보민창(補民倉)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그 기능은 백성들의 무거운 잡역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민고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은 민의 생계와 직접 관계되었기 때문에, 민고를 운영하는 임원도 신중하게 선출하였다. 순천에서는 민고도유사와 민고도감의 임원이 있었다. 민고도유사는 순천에서 명망이 있고 일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고, 민고도감은 좌수를 역임한 향임(鄉任) 중에서 선출하였다.

그런데 18세기 들어서면서 순천의 향권을 장악했던 순천 양반들은 향교로 그들의 활동 무대를 옮겼다. 그들은 향교의 집강직을 맡으면서 순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순천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향임의 인사권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부세 운영과 같은 지방 행정에도 일부 관여하였다. 이 때문에 순천 향교에 대해 순천 양반들은 정령(政令)을 내는, 작은 조정과 같은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¹³⁾

이 과정에서 향교 소속 인사들이 민고 유사(民庫有司)나 집강, 사수(社首)와 같은 직책을 맡아 지방 행정에 관여하였다. 민고유사는 민고 관리상의 폐단이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집강과 사수는 각각 향약과 사창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향교의 양반들이 맡았다.

민고 운영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였다. 기존 사족들은 기존 향촌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신흥양반의 향권 도전을 제어하기 위해 민고 운영에 적극 간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V. 순천 사족의 진흥 참여

농업사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은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흉년이였다. 조선 정부는 이에 대비해 환곡이나 사창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환곡과 사창곡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12) 민고에 대한 서술은, 김덕진, 「조선후기 전라도 순천부의 잡역세 운영과 조달」 『경상사학』 7·8합, 1992에 의거하였음.

13) 『순천집강안』(1962년).

그것도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었다. 큰 흉년이 들면 재생산기반이 취약한 빈농에게는 환곡이나 사창곡마저도 큰 부담이었다. 그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삶을 찾아 유랑해야 했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았다. 정부에서 이를 방관하면 결국 사회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빈농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지급하여, 그들이 흉년을 극복하고 이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것이 진휼이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효과적인 진휼을 시행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에 큰 힘이 되었다.

순천에서도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진휼이 시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히 2020년 1876년말과 1877년 봄에 순천에서 시행했던 진휼과 관련된 자료인 『진자미전래상급용하구별책(賑資米錢來上及用下區別冊)』이라는 자료가 발굴되었다.¹⁴⁾ 자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순천 여러 면에서 시행했던 진휼에 대한 결산보고서이다. 즉 진휼에 사용한 쌀과 돈(미전)의 출처(래상)와 구체적인 지출 내역(용하)을 구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순천의 진휼 실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뿐아니라, 순천부사와 순천의 유력 양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순천의 진휼에 대해 살펴보겠다.

1876년 순천의 흉년은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이는 순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었다. 19세기 전 기간에 걸쳐 가장 큰 규모의 흉년은 1809년과 1814년의 그것이었다. 이때 전국적으로 19만 결이 넘는 재결이 내려졌는데, 당시 실종의 약 1/4이 재해를 입었음을 의미했다. 1876년에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13만 결에 가까운 재결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19세기 초반 두 차례의 대기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대표적인 흉년을 거론할 때 기사년(1809)과 갑술년(1814)을 언급하였으나 1876년 이후에는 병자년(1876)으로 대체할 정도로,¹⁵⁾ 1876년 흉년은 전라도 농민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다.

순천 지역 전체의 진휼 시행은 순천부사의 주관이었다. 하지만 실무는 유향소에서 총괄해서 주관하였다. 좌수 정동식이 총괄하고, 분진 도감으로 조정길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병방과 호장을 비롯한 향리 5명과 서사 6명, 회계 장부를 감사하는 색리 3명이 임명되었다. 아울러 삼일포면의 허인영을 비롯한 18개 면과 곡화목 등 19곳의 현지 진휼 담당자인 분진유사(分賑有司), 그리고 위의 19곳과 순천 소속의 돌산을 비롯한 여러 섬들, 전라 좌수영 소속의 고진(古鎭), 방답진의 향리 각 1명 등 27명이 분진색리(分賑色吏)로 임명되어 진휼을 담당하였다.

이 중 주목하고 싶은 것은 18개면의 분진유사이다. 용두는 양현린, 해촌은 신방, 서면 박환배, 황전 김정엽, 월등 장호열, 쌍암 조재길, 주암 조상기, 송광 조병준, 상사 박내익, 별량 신명호, 하사 김한국, 도리 신경휴, 장평 강내찬, 소안 정형우 등이 각면의 분진 유사였다.

이 중 옥천 조씨들이 널리 세거하는 쌍암, 주암, 송광 등 3면 모두 조씨가 분진유사 차정되었다. 그 중 조상기는 옥천 조씨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월등에는 목천 장씨, 용두에는 제주 양씨, 삼일포는 양천 허씨, 해촌과 별량면은 고령 신씨가 해당지역에 오랫동안 세거했으며, 이들은 모두 조선 중기 이래 순천 지역 향권을 장악했던 집안들이다.¹⁶⁾ 이들 집안의 일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대체로 해당 면의 분진 유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1877년 진휼 과정에서 순천 지역의 전통적인 양반 가문의 인물들이 각 면에서 진휼 실무를 총괄하는 등

14) 이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육, 『『진자미전래상급용하구별책』의 내용과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사학보』 97, 2021에 의거하였다.

15) 황현, 『매천야록』 상.

16) 정승모, 「향집강안을 통해본 조선후기 순천의 향권추이」, 『순천향교사』, 2000, 143쪽.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진흙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관과 유력 사족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진흙에 가장 큰 재원은 대원군이 설치한 사창곡이었다. 그 다음 비중이 순천의 백성들이 납부한 원납전으로 거의 20% 비율을 차지한다. 감영에서 진흙을 위해 지원한 비용이 그 다음이고, 순천부사 서정순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비용도 7.3%에 달했다. 즉 순천부사와 지역민들도 진흙곡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납전을 납부한 이들은 양반 사족 이외에도 향리나 일반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순천의 전통 양반들이었다. 먼저 『승정원일기』에는 1877년 진흙시 거액의 원납전을 납부한 이들을 포상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순천에서는 유학 박처양(朴處陽), 이용근(李龍根), 정동열(鄭東烈), 진사 조선호(趙善浩), 출신 정복철(鄭福喆)이 포상 대상자로 언급되었다.¹⁷⁾

박처양은 황전에 거주하며, 1200냥을 납부한 것으로 『구별책』에 나오고 있다. 『속승평지』에도 그가 나온다. 그에 대해 자가 사현(士賢), 본관이 반남이고 박소(朴紹)의 후손이며, 고종 때 선공감 감역과 곤양군수를 지냈다고 하였다.¹⁸⁾ 매천 황현은 그에 대한 만사에서, “부유하면 어질지 못하다는 옛말이 있으나, 부유하면서도 어진 이가 바로 박처양”이라고 하였다.¹⁹⁾ 반남 박씨는 순천 입향 시기가 늦기 때문에 조선시대 순천을 대표하는 씨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종 때에는 황현과 교류하고 어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납전도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박처양과 함께 가장 많은 1,200냥을 납부한 것으로 나오는 이용근은 『구별책』에는 쌍암면에 거주하고 1,040냥을 납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원납전 액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승평속지』에서 동일인으로 파악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자는 응오(應五), 호는 신재(愼齋)이며 본관은 양성(陽城)이다. 종족들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칭송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²⁰⁾ 양성 이씨는 소위 순천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을 지칭하는 7성 8문 중 하나이다. 그리고 순천 입향조 이래로 쌍암면 평지마을에 세거하고 있는데, 『승주읍지』에는 이용근이 평지마을 출신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이용근은 순천을 대표하는 사족 가문이었던 양성 이씨의 일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동열은 『구별책』에 소라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소라면에서는 그 이외에도 정동식과 정환춘 등 일족으로 보이는 이들도 원납전을 납부하고 있다. 『여수시사』에 보면, 소라 현천에 거주하는 정동열이 진주 영장, 소라 죽림에 거주하는 정환춘은 가감역관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소라 현천은 소위 7성 8문 중 하나인 경주 정씨, 그 중에서도 곡구(谷口) 정씨의 후손들이 세거하는 곳이다. 따라서 정동열을 비롯한 3인은 경주 정씨 일족이 아닐까 추정된다. 정동열은 1887년 여수복현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다 처벌받은 인물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동열 역시 순천을 대표하는 유력 사족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에서 포상 받은 5인 중 유일하게 진사로 나오는 조선호는 『구별책』에 송광면 거주로 기록되어 있다. 『사마방목』에는 1803년생이고 1870년에 진사시에 입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관은 순창(옥천), 거주지는 남원이며, 부친은 진사 조현정(趙鉉廷)이었다. 방목에는 남원으로 되어 있지만, 『승평속지』에도 소과 급제자로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보아 순천 거주자로 보는

17) 『승정원일기』 2841책, 고종 14년 8월 21일.

18) 『昇平續志』 권3, 蔭仕.

19) 황현, 『梅泉集』 권3, 「挽朴昆陽處陽」.

20) 『승평속지』 권3, 文學.

것이 옳을 것이다. 순천 주암, 쌍암, 송광면에는 순창(옥천) 조씨들이 널리 거주하고 있다. 옥천 조씨는 7성 8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순천에서 족세가 가장 큰 문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후 역시 순천 유력 사족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경제력도 갖춘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승정원일기』에 직역이 출신으로 나와있는 정복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지 못하였다. 『구별책』에는 상사면 거주자로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경주 정씨들은 순천 입향 이후 족세가 번성하면서 해룡면, 상사면, 소라면 등에 그 후손들이 분포하고 있다. 정복철 역시 그 중의 한 명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처럼 1877년 진휼 과정에서 많은 액수를 기부함으로써 포상을 받았던 5인 중 4인은 순천을 대표하는 사족의 일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1인도 그들과 비슷한 성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흉년과 같은 재난이 닥쳐 민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덕적 책무의식,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충실한 지배세력의 적극적인 대응은 효과적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1876년 순천의 진휼은 그것의 좋은 사례이다.

VI.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순천의 양반 사족들은 향약이나 군포계 운영을 통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선의에 의한 부조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일반 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각출하여 재원을 만들거나 비슷한 금액의 계전을 납부하였다. 아울러 본인들이 선의를 베풀고 희생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지출하였다. 그들은 군역에서 면제되었음에도 향약 재원을 군역과 관련된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에 동조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근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재원을 희사하거나 효율적인 진휼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역 사회의 일원이자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족들이 민생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1862년 농민항쟁과정에서 순천에서는 향리 등에 대한 적대의식을 강하게 보이는 반면, 사족들과의 갈등관계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19세기 순천 사족의 향약 운영과 그 성격>에 대한 토론

최연숙(한국국학진흥원)

이욱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향약 가운데 18~19세기 순천 지역의 향약 운영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족들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주셨습니다. 순천 사족이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스스로 향약이나 계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진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은 오늘날의 위정자 혹은 그에 상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이의 자세를 고민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1862년 순천 농민항쟁은 다른 지역보다 과격한 양상을 띠었는데도 순천지역 사족과 농민의 갈등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사족이 주도한 향약과 같은 조직 때문이었으며, 특히 순천의 사족은 향약 운영에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순천 사족의 향약과 같은 조직 운영이 백성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이었던 점이 그 이유였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향약은 어느 지역이나 대체로 사족이 주도하였고 교화와 처벌의 비중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족이 향약이나 계, 민고를 운영하고 진흥에 참여한 것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순천 지역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순천 지역의 향약은 사족 주도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순천 부사가 주도하여 추진한 경우도 있었는데, 순천 부사가 주도하여 추진한 경우에도 계장을 비롯한 향약의 임원들은 모두 지역사회의 공론에 따르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는지, 아니면 사족 주도로 시행되다가 관이 개입하면 그대로 관으로 흡수되어 운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 순천의 주현향약은 관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세의 납부와 잡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군역과 같은 부세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의 운영을 통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 하고자 사족들이 노력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세도 정치로 인해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삼정(三政)의 문란이 극심했던 시기로, 순천의 주현향약 역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된 것이지,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4. 군역 폐단은 양인의 몰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천에서는 일찍부터 군역 부담을 양인에게 전담시키지 않고 면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동포제(洞布制)를 시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삼정 개혁을 위해 사창제와 함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동포제(뒤에 호포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발표만 하고 시행한 것은 순천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5. 순천에서 진흥로 포상받은 5인 중 유일하게 진사로 나오는 조선호(趙善浩)를 『구별책(區別

冊)』과 『승평속지(昇平續志)』에 소과 급제자로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을 근거로 순천 유력 사족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경제력도 갖춘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방목을 보면 부친인 진사 조현정(趙鉉廷)과 조선훈의 거주지가 모두 남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에 제출하는 시권(試券)에 거주지가 순천인데도 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향약, 특히 순천 지역의 향약 운영에는 문외한인지라 전공자에게는 다소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와 같이 비전공자에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린 것이니,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세기 초 황익재(黃翼再)의 진휼 활동과 순천 사창·향약의 운영

이행목(고려대)

1. 머리말
2. 전라도 연해 지역의 흉년과 황익재의 진휼 활동
3. 순천 사창·향약의 시행과 賑廳의 설치
4. 맺음말

1. 머리말

17세기에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자연재해 및 기근의 발생과 이와 함께 동반된 전염병의 유행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²¹⁾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선왕조의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불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기근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각종 진휼 기구를 정비하고, 환곡을 비롯한 대규모 비축 곡물을 마련하는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²²⁾

이러한 논의 가운데 향촌 사회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사창·향약의 시행이 대두되었다. 사창·향약은 남송대 주자가 시행한 제도로 조선시대 내내 이상적인 향촌안정책이자 진휼책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수많은 관료·지식인층이 국가개혁을 논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사창·향약론이었다. 전란과 기근 이후로 무너진 향촌의 질서와 풍속을 교화하는 방법으로 향약의 시행이 강조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환곡제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대안적인 진휼 제도로 사창제도가 주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사창과 향약을 표리관계로 이해하였는데, 17세기 전후의 사창·향약론자로는 이이를 비롯하여 유형원, 이유태, 홍중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자의 사창·향약 제도를 계승하되 조선의 현실에 맞게 그 내용을 변용하여 각자의 사창·향약론을 펼쳤다.²³⁾

21) 김성우, 1997,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 김덕진, 2009, 『대기근-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2) 정형지, 1997, 「숙종대 진휼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25; 문용식, 2000,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 運營』, 경인문화사; 원재영, 2015, 「조선시대 재해행정과 17세기 후반 진휼청의 상설화」, 『동방학지』 172; 하서정, 2021, 「조선 현종대 초반 진휼의 개편 논의와 의미 - 賑恤 堂上의 설치와 賑恤御史 파견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98.

23) 조선후기 사창·향약론과 관련해서는 모두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 성과가 제출된 상태이다. 그 가운데 17세기 전후로 제기된 사창·향약론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들을 참고할 수 있다. 吳煥一, 1989, 「栗谷의 鄉約觀과 社倉契約束의 性格」, 『중앙사론』 6; 任先彬, 1994, 「草廬 李惟泰의 鄉村社會統制論: 己亥封事와 草廬鄉約의 分析을 중심으로」, 『滄海朴秉國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金正讚, 2001, 「『己亥封事』에 나타난 李惟泰의 國政運營論」, 『靑藍史學』 4; 한종수, 2021, 「『鄉約通

본고에서 다룬 황익재 역시 사창·향약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이다. 황익재의 자는 再叟, 호는 華齋 혹은 白華齋이고, 상주에서 태어났으며, 학문적으로는 근기남인·영남남인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²⁴⁾ 황익재는 과거에 급제한 이래로 여러 지역의 지방관으로 활동하였는데, 순천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지역 내에서 사창·향약을 실시하였다. 여타의 사창·향약론자들과 달리 지방관으로서 사창·향약을 현실에서 직접 구현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기록이 절목 형태로 남아있어 많은 연구의 주목을 받았다.

향약이나 사창을 다룬 연구에서는 다른 사창·향약론과의 비교를 통해 황익재 사창·향약의 특징을 규명하였다.²⁵⁾ 대체로 국가 혹은 관 주도의 사창·향약의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만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시행된 제도임에도 사창과 향약이 별도로 다루어져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였으며, 사창·향약과 함께 시행된 賑廳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순천부사 황익재의 지방행정 개선을 밝힌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²⁶⁾ 이 연구에서는 황익재가 부임하던 당시 순천부의 민폐를 살피고, 지방행정의 개선책으로서 「社倉節目」, 「賑廳節目」, 「鄉約節目」, 「養士齋節目」을 살폈다. 이를 통해 ‘養民策’과 ‘教化策’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사창-진청’, ‘향약-양사제’가 시행되었음을 밝혔다. 최근에는 19세기 사창·사환제의 운영을 다룬 연구에서 황익재의 사창·향약 사례가 재조명되기도 했다.²⁷⁾ 이에 따르면 황익재의 사창·향약은 주자 사창의 이상적인 특징을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은 인보편제 및 공동체 조직을 통한 향촌의 공론 조성과 그에 기반한 운영에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 사창론의 맥락 속에서 황익재 사창·향약의 연원을 율곡 이이에서 찾는 연구도 제출되었다.²⁸⁾ 이를 통해 황익재가 이이의 사창을 계승하여 사창·향약을 실시하고, 한편으로 진청을 설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를 도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황익재가 시행한 사창·향약은 물론 賑廳 운영의 내용과 성격이 밝혀졌다. 다만 황익재의 사창·향약 및 진청 운영의 배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 및 기근이 극심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황익재는 지방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흉년을 맞이하여 진휼을 시행해야 했다. 사창·향약의 시행과 진청의 설치 역시 연이은 흉년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지방관이 군현 내에서 시행한 흉년 대비책이자 진휼책으로써 황익재의 사창·향약 및 진청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황익재가 남긴 절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요구된다. 기존 연구를 통해 각 절목의 내용이 밝혀졌으나 연구자에 따라 사창의 성격, 사창·진청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또한 절목의 큰 방향이 주자의 사창·향약을 계승하고 있다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변용이 가해졌으며, 그것이 순천 지역의 상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變』에 나타난 흥중삼의 鄉約觀 - 「주현향약」 절목을 중심으로 -, 『中央史論』 53; 최주희, 2022, 「반계 유형원의 救荒論」, 『韓國實學研究』 44.

24) 황만기, 2018, 「화재 황익재의 삶과 학문경향」, 『한문학논집』 51.

25) 한상권, 1984, 「16·17세기 향약의 구조와 성격」, 『진단학보』 58; 金龍德, 1989, 「朝鮮後期の 地方自治 - 鄉廳과 村契 -」, 『국사관논총』 3; 향촌사회사연구회 편, 1990, 『조선후기 향약 연구』, 민음사; 오환일, 1991, 『朝鮮時代 社倉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용식, 2009, 「17·18세기 사창을 통한 지방관의 재정 보용 사례」, 『역사와 현실』 72.

26) 趙潑來, 1985, 「18世紀初 順天府의 地方行政動態: 府使 黃翼再의 改善行政事例」, 『남도문화연구』 1.

27) 송양섭, 2021, 「19세기 社倉·社選制 운영과 향촌민의 진휼참여 - 순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97.

28) 설현지, 2022, 「황익재(黃翼再, 1682~1747)의 사창 시행과 의미」, 『민족문화논총』 80.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절목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흉년의 대비와 향촌의 안정을 도모한 황익재의 구상과 그 특징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전라도 연해 지역의 흉년과 황익재의 진휼 활동

황익재는 1702년(숙종 28) 21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²⁹⁾ 승문원, 봉상시 관원을 거쳐 예조좌랑, 병조좌랑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평안도·충청도·전라도 도사를 역임하였다. 1711년(숙종 37) 1월에는 무안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그가 맡은 첫 번째 수령직이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안현감으로 활동하다가 곧이어 순천부사로 임명되어 2년간 재직하였으며, 이후 성균관 전적, 종부시 정, 군자감 정을 역임한 후 다시 영광군수에 임명되었다. 1728년(영조 4)에는 종성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 도중에 戊申亂이 발발하여 영남안무사 박사수의 종사관이자 영남소모사로 활약하였다. 무신난 진압 이후에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고, 석방된 뒤에도 벼슬에 오르지 않고 은거하였다. 과거 급제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는 약 27년 동안 관직에 재직한 기간은 15년 정도인데, 그 가운데 주요한 이력은 단연 지방관이였다.³⁰⁾ 무안현감·순천부사·영광군수로 재직한 기간만 8년으로 사실상 관직 생활의 절반을 지방관으로서 활동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초 무렵은 산발적으로 흉년과 기근이 발생하던 시기였다. 황익재가 지방관으로 부임한 지역은 모두 전라도 내의 군현으로 연이은 흉년을 겪은 곳이었다. 그가 지방관으로 활동하던 18세기 초 전라도 지역의 재해 상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1> 18세기 초 전라도 지역의 재해 상황

연도	우심	지차	초실	비고
1710년(숙종 36)	6	14	33	연해 7읍 기근
1711년(숙종 37)	·	·	·	전세, 대동미 경감, 給災 시행
1712년(숙종 38)	14	25	14	
1713년(숙종 39)	23	15	15	연해읍 재해, 감진어사 파견 강화도, 경상도에서 곡물 이전
1714년(숙종 40)	20	18	15	진휼청 돈 2만냥, 공명첩 발급
1715년(숙종 41)	12	29	12	제주로 진휼곡 지원(23000석)
1716년(숙종 42)	40	13	0	8도 흉년, 진휼청 동전 지원
1717년(숙종 43)	·	·	·	
1718년(숙종 44)	9	·	·	
1719년(숙종 45)	·	·	·	전염병 유행
1720년(숙종 46)	25	19	9	호남의 흉년 병신년보다 심함 진휼청미, 비변사구관미 留賑
1721년(경종 1)	21	23	9	
1722년(경종 2)	24	19	10	제주로 진휼곡 운송, 각읍 진휼 시행
1723년(경종 3)	11	20	22	수재로 인한 기근
1724년(경종 4)	9	11	33	
1725년(영조 1)	32	21	0	삼남 흉년, 연해 7읍 심각, 경상도·평안도 賑資 운송

29) 『華齋集』 卷7, 付祿 年譜.

30) 趙潑來, 1985, 앞의 논문, 5~6쪽.

*황익재가 지방관으로 재직한 시기는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전거: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臚錄』, 『承政院日記』, 『御營廳臚錄』, 『禁衛營臚錄』

대략적인 재해의 상황은 災實分等を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7세기를 거치면서 재해 및 농사 작황에 따라 각 군현을 尤甚·之次·稍實로 구분하였는데, 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우심읍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도내 재해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³¹⁾ 1716년이나 1725년과 같이 전라도 내 군현의 대부분이 우심읍으로 구분된 해에는 도 전체에 극심한 재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흉년의 급박한 상황과 그 대처와 관련한 기사가 자주 확인된다. 우심읍이 20읍이 넘는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우심읍이 적더라도 재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휼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표 1>을 통해 18세기 초의 짧은 기간에도 전라도 지역은 한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흉년이 발생하였으며, 흉년이 아닌 해에는 다른 지역으로의 곡물 운송이나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민의 부담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정에서는 각종 부세를 건감하여 민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다른 지역의 곡물을 옮겨오거나 진휼청의 동전을 각 지역에 보내 진휼 재원을 마련하게 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군현에서는 수령의 주도 아래 기민 구제를 위한 진휼이 시행될 수 있었다.

이 시기 황익재는 무안현감(1711.1~1715.5), 순천부사(1716.11~1718.11), 영광군수(1723.8~1725.5)로 재직하였는데, 그가 재직한 지역은 모두 전라도 연해 지역으로 당시 전라도 내에서도 재해가 집중된 지역이었다.³²⁾ 전라도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거듭된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황익재는 부임지에서 매년 진휼을 시행해야 했다.

1710년 가을에는 무안현을 비롯한 진도, 해남, 영암, 함평, 흥양, 나주 등 전라도 해변 7읍의 재해가 심각하여 조정에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지역은 재해를 면했지만 유독 7읍에 해일 피해가 집중되어 극심한 기근이 우려되었다. 전라도 연해 지역은 3년간 가뭄이 이어져 다수의 백성이 이미 고을을 떠나 흩어진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흉년을 맞이하여 진휼이 시행되었고, 만약 보리농사마저 흉작으로 판명되면 연해 일대에는 남아있는 백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7읍 중에서도 무안, 해남, 진도, 영암의 재해 상황이 심각했다. 특히 무안현은 경내 5천여 호의 민호 가운데 2천여 호가 유산하여 사라졌다고 할 지경이었다.³³⁾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민호가 고을을 떠나간 것이었다.

초기에는 전라감사의 요청과 조정의 논의 끝에 우심 지역에서는 봄에 상납할 대동미를 1결당 1두씩 줄이도록 하였으나 이어진 전라감사의 요청 끝에 상납해야 할 전세, 대동미 전부를 가을까지 연기하였다.³⁴⁾ 전세와 대동미는 '惟正之供'으로 칭해지면서 흉년이라도 감면이나 정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전세, 대동미 감면 및 연기는 그만큼 전라도 재해 지역의 상황이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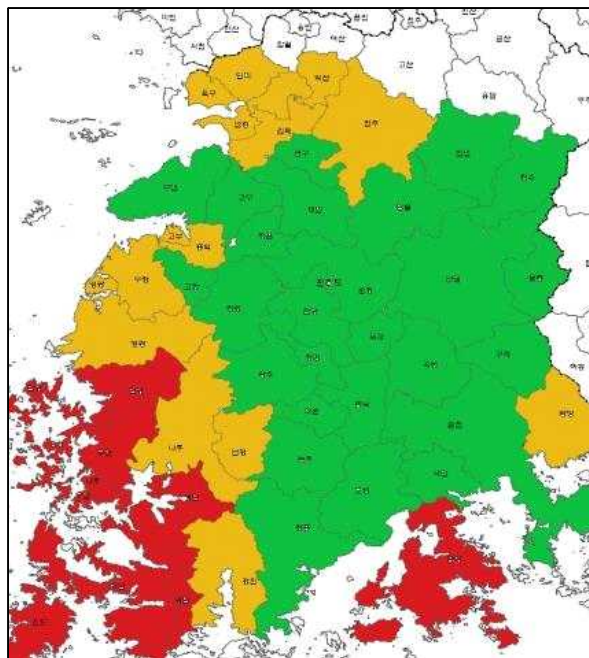
31) 숙종 초반에는 4~5등급으로 구분되기도 했으나 조정에서는 예외적인 조치로 구분하였으며 3분등을 원칙으로 정식화하였다(양진석, 2002, 「17세기 후반 災實分等과 還穀의 환수책」, 『규장각』 25, 130~132쪽).

32)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전라도 연해 지역은 산군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우심읍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박범, 2021, 「19세기 전라도 재실분등의 추세와 자연재해의 지역성」, 『조선시대 사학보』 97).

33)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2월 20일.

34)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1월 6일;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2월 7일;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2월 20일.

이러한 상황에서 진휼이 시행되는 1월에 무안현감이 교체되었다. 진휼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지역 사무에 익숙한 지방관이 진휼 사무를 수행하고, 新舊迎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령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진휼이 끝날 때까지 수령의 교체를 지양했다. 그럼에도 진휼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에 수령 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무안현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파직되면서 불가피하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때 황익재가 새로운 무안현감으로 임명되었다.³⁵⁾ 전라감사는 진휼의 정사가 긴박하니 새로 차출된 무안현감에게 말을 주어 신속히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조의 당상이 부재한 탓에 하직이 지체되었다. 결국 비변사의 요청에 따라 황익재는 肅拜도 면제받고 말을 받아 무안현으로 내려갔다.³⁶⁾



<그림 3> 1710년 전라도 지역의 재해 상황

황익재가 무안현에 부임했을 당시 전라도 지역의 재해 상황을 우심·지차·초실로 구분하면 <그림 1>과 같다.³⁷⁾ 2월이 되어서 현지에 부임한 황익재는 곧바로 진휼 업무에 돌입했다. 이때 경내의 곡물이 부족하자 담양에서 곡물을 옮겨왔으며, 진휼이 한창 진행 중이던 3월에는 광주, 능주의 곡물을 옮겨왔다.³⁸⁾ 무안현과 인접한 고을로는 함평, 영암, 해남, 나주 등이 있었지만 이 고을들 역시 우심읍으로서 앞서 재해가 심각한 7읍에 속하여 진휼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었던 만큼 곡물을 옮겨오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담양, 광주, 능주는 당시 재해가 비교적 덜한 초실읍이었다.³⁹⁾ 이에 내륙 지역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재해가 덜한 담양, 광주, 능주의 곡물을 옮겨와 진휼을 이어간 것이다.

이듬해인 1712년(숙종 38)에는 兩麥의 농사가 흉작인 곳이 많아 우려되었으나 황익재가 부임한 무안현은 재해의 피해가 크지 않아 초실읍으로 구분되었다.⁴⁰⁾ 이 해에 황익재는 司馬齋·

35) 『승정원일기』 458책, 숙종 37년 1월 6일.

36)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1월 11일.

37) 우심읍은 붉은색, 지차읍은 주황색, 초실읍은 초록색으로 구분하였다.

38) 『華齋集』 卷7, 付祿 年譜.

39) 『어영청등록』 21책, 숙종 36년(1710, 경인) 10월 1일.

養士齋를 세워 학문을 권장하고, 백성들의 원하는 바대로 南倉을 건립할 수 있었다.⁴¹⁾ 그러나 1713년(숙종 39)에 또다시 전라도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흉년이 발발하였다. 봄·여름까지만 해도 큰 우려가 없었으나 6월 이후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흉년이 예상되었다.⁴²⁾ 여기에 風災까지 겹치면서 각 도의 농사는 일찍부터 대흉년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 연해 지역에 재해가 집중되었는데, 전라도의 경우 당시의 재해가 숙종 초년에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흉년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될 정도였다.⁴³⁾

이듬해의 진휼에 대비하여 전라감사는 각종 진휼곡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강화도의 환곡 1만석을 비롯하여, 지역 내에 저장된 환곡이 진휼곡으로 구획되었다. 한편으로는 감사와 함께 전라도 연해 지역의 진휼 업무를 살필 감진어사를 파견하였다. 감진어사는 명목상으로는 진휼의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 직책이었으나 실제로는 監賑 외에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진휼곡의 보충이나 부세 견감 등의 사안을 조정해 보고하여 원활하게 진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⁴⁴⁾

이 해에는 전라도 내에서도 재해가 극심한 전라우도 연해 지역의 진휼을 관장하는 감진어사로 홍석보가 파견되었다. 감진어사 홍석보는 전라우도 연해 지역의 상황을 파악한 뒤 상납해야 할 전세와 대동미를 진휼 재원으로 사용할 것과 경상도의 곡물 1만 5천석을 전라도 연해로 옮겨올 것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았다.⁴⁵⁾ 이 외에도 감진어사의 요청에 따라 도내 환곡 및 모곡을 비롯하여 산성곡, 공명첩, 궁방에 바칠 세금 등이 전라도 연해 지역의 진휼 재원으로 마련되었다.⁴⁶⁾ 이를 바탕으로 감진어사와 전라감사의 주관 아래 진휼이 시행될 수 있었다.

이때 황익재가 재직 중이던 무안현은 진도, 강진, 해남, 영암과 함께 ‘尤甚之尤甚’이라고 꼽힐 만큼 재해가 심각한 지역이었다.⁴⁷⁾ 해당 고을들은 불과 2년 전에도 진휼이 시행된 지역이었는데, 또다시 재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진도의 경우는 전라감사의 요청에 따라 신포·군포가 모두 감면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4읍도 감진어사의 요청에 따라 상납해야 할 군포·신포가 감면되었다.⁴⁸⁾

이 해에 무안현감 황익재는 11월부터 진휼을 시행하였다.⁴⁹⁾ 일반적으로 9~10월에 작황이 흉년으로 판정되면 11~12월 사이에 중앙에서는 각종 부세의 견감이나 곡물 운송을 결정하고, 지방에서는 진휼 대상자를 선별했다.⁵⁰⁾ 본격적인 진휼곡의 분배는 해가 바뀐 이후 正月부터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4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지역의 사정에 따라 2~3월부터 진휼곡을 분배하기도 했으며, 4월 이후에도 진휼을 이어가기도 했다. 간혹 심각한 흉년에는 ‘歲前救急’의 형태로 12월에 해를 넘기기 어려운 자들을 추려서 진휼곡을 분배했으며, 設賑 자체를 11월이나

40) 『금위영등록』 23책, 숙종 38년(1712, 임진) 11월 19일.

41) 『華齋集』 卷7, 付祿 年譜.

42)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43)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9월 16일. 계해년(1683, 숙종9), 갑자년(1684, 숙종 10)의 대흉년으로 당시에 전라도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흉년이 발생하여 부세 견감, 진휼곡 운송 등 각종 진휼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때 지역에서는 수령이 자비곡을 마련해 진휼을 행하기도 하고, 민간에서 곡물을 모집하여 진휼곡을 보충하기도 했다.

44) 감진어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원재영, 2016, 「17~18세기 재해행정과 御史의 역할」, 『한국문화』 75: 박범, 2023, 「18~19세기 초 감진어사의 파견과 역할」, 『한국사연구』 202를 참조.

45)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12월 21일.

46)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12월 20일.

47)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10월 17일.

48)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10월 17일.

49) 『華齋集』 卷7, 付祿 年譜.

50) 원재영, 2014, 『朝鮮後期 荒政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월부터 시작하기도 했다. 11월부터 진휼을 시행했다는 기록은 그만큼 무안현의 급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때의 진휼도 4~5월까지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⁵¹⁾

흉년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을 1714년(숙종 40) 가을에 또다시 전라도 내에 흉년이 발생했는데, 무안현은 우심 20읍 중 하나였다.⁵²⁾ 흉년으로 인해 진휼이 반복되는 가운데 또다시 흉년을 맞이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전라감사의 진휼곡 요청에 따라 진휼청 돈 2만냥을 구획하였으며, 우심읍의 경우에는 대동미 2두를 줄여주었다.⁵³⁾ 황익재 역시 또다시 흉년을 맞이하여 이듬해 2월부터 진휼을 시행하였다.⁵⁴⁾ 황익재는 무안현감으로 재직한 4년 가운데 3년간 진휼을 시행해야 했던 셈이다. 사실상 거의 매년 진휼 업무를 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안현에서 황익재가 시행한 진휼에 대해서는 감진어사와 암행어사가 남긴 기록을 통해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712년 전라도 연해 지역의 감진어사로 파견된 홍석보는 진휼이 시행되는 고을을 돌아다니며 그 행정을 평가해 보고하였다.⁵⁵⁾ 그 가운데 황익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남겼다.

무안현감 황익재는 본성이 慈詳하며, 강명하게 다스리고, 銳意로 다스려 명제가 더욱 성합니다. 본읍을 오래 다스리면서 여러 차례 진휼 사무를 겪어 민간의 형세를 밝게 알고 있습니다. 기민을 초출할 때 등수를 매우 분명하게 했고, 곡물을 料理할 때 구획이 편리함을 얻었습니다. 본현의 물력이 부족했으나 白給할 자원을 사사로이 갖춘 것이 거의 2천여 석에 이르렀습니다. 진휼곡을 분배하고, 종자를 나눠주는 일을 상세히 다하여 남은 것이 없었으니, 백성은 굶어 죽는 자가 없고, 들은 황폐해진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칭송하는 것이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⁵⁶⁾

감진어사 홍석보는 황익재의 진휼행정에 대해 기민을 선별할 때 등급을 나누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곡물을 마련하는 방법도 편의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진휼 대상자인 기민을 선별하는 과정은 진휼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작업이었으며, 곡물을 料理하는 일은 진휼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이지만 자칫 지역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었다. 황익재는 무안현에 부임하자마자 진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기민 선별(抄出飢民)’이나 ‘진휼곡 마련(料理穀物)’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감진어사에 따르면 무안현 내에 진휼곡으로 쓸 물력이 부족하자 황익재는 2천여 석의 곡물을 사적으로 마련해 진휼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조정에서 구획한 公穀과 별개로 수령이 자비곡을 마련하여 기민을 구제하는 방식은 善治의 하나로 인식되었는데, 감진어사 역시 황익재가 사적으로 곡물을 마련해 기민을 구제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⁵⁷⁾ 여기에 기민에게 무상으로

51) 3월에는 감진어사의 요청에 따라 전라도 연해 지역으로 진휼청의 돈 2만냥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4월에도 제주, 경상도 진휼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5월이 넘어가면서는 감진어사의 서계, 각도 감사의 장계가 올라와 진휼을 시행한 지역의 수령에 대한 상벌이 결정되었다(『비변사등록』 482책, 숙종 40년 3월 11일; 『비변사등록』 482책, 숙종 40년 3월 17일; 『비변사등록』 483책, 숙종 40년 5월 24일)

52) 『어영청등록』 24책, 숙종 40년(1714, 갑오) 11월 3일.

53) 『비변사등록』 67책, 숙종 40년 9월 2일; 『비변사등록』 68책, 숙종 41년 1월 2일.

54) 『華齋集』 卷7, 付祿 年譜.

55) 『繡衣錄』 「羅道監賑御史洪錫輔書啓」.

56) 務安縣監黃翼再 性本慈詳 濟以剛明 銳意爲治 聲譽愈盛 久莅本邑 屢經賑事 民間事勢 無不洞知 抄出飢民之時 等數極其分明 料理穀物之際 區畫最得其便是白乎等以 本縣物力不敷 而私備白給之資 幾至二千石許是白遣 分賑給種 詳盡無餘 以致民無捐瘠 野不荒廢 四鄰稱頌 同然一辭是白齊(『繡衣錄』 「羅道監賑御史洪錫輔書啓」)

57) 각읍 수령이 흉년에 대비하여 자비곡을 마련하는 일은 점차 의무화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용식,

지급되는 진휼곡은 물론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까지 적절히 분배하여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고, 다음 농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황익재의 진휼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진어사가 이와 같은 내용의褒啓를 올리자 조정에서는 황익재를 准職에 제수하는 상을 내렸다.⁵⁸⁾

한편 1714년(숙종 41) 파견된 전라도도 암행어사 김상옥의 서계에도 무안현감 황익재의 진휼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⁵⁹⁾ 암행어사는 직접적인 기민 구제 외에도 여러 사안을 언급하며 지방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황익재는 무안현에 흉년이 발생하자 성심껏 진휼을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각종 폐단을 제거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우선 진휼과 관련해서는 인근 고을에서 곡물을 옮겨오는 일을 주선하여 정실한 곡물을 받아와 기민들을 구제하였다. 이는 무안현에 부임한 해에 진휼할 때 담양, 광주, 능주에서 곡물을 옮겨온 일을 말하는 듯하며, 1713년에도 황익재가 곡물이전을 주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무안현감 황익재는 정사를 행함에 강명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세밀하여, 마음을 다해 무휼하고, 뜻을 다해 賑賑했습니다. 戶籍紙와 年分紙의 값을 관에서 마련하였고, 漁産의 차례를 間日로 진배하도록 하되 點退하지 않았습니다. 衙舍와 창고를 모두 수리하면서도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며, 군기와 여러 기구 또한 모두 수리하였으니, 善治와 善賑이 실로 뛰어납니다.⁶⁰⁾

다음으로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무안현에서는 戶籍紙 80권에 대한 값으로 미 50석을 민호에게서 징수하였는데, 황익재가 부임하면서 절반을 줄인 25석만 거두도록 하였다. 또한 진휼을 시행하는 해에 年分紙·壯白紙 100권에 대한 값으로 민간에서 거두어야 할 미 25석을 관에서 대신 마련하였다. 한편 무안현에서는 포구 근처에 300명을 정해서 각종 어류를 관에 바치도록 해왔는데, 황익재는 흉년 이후에는 몇몇 여유가 있는 자들에게 마련해 바치도록 하였고,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점퇴하지도 않아 그로 인해 浦民들이 지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여 암행어사 김상옥은 황익재의 善治와 善賑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⁶¹⁾

요컨대 18세기 초 전라도 연해 지역은 연이은 흉년이 발생하여 크고 작은 진휼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황익재는 무안현감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년 진휼을 시행해야 했다. 민호의 사정을 살펴 기민을 초출하고, 진휼곡으로 사용할 곡물을 마련하였으며, 관에 비축된 곡물이 부족할 때는 사적으로 마련한 곡물을 분배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기민 구제 외에도 지방행정의 개선을 통해 흉년을 맞이하여 곤궁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이같은 황익재의 진휼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이와 같은 지방관으로서의 진휼 활동은 순천부, 영관군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순천부에서는 연이은 흉년의 여파가 남아 있는 가운데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고, 이어질 흉년에 대비할 여러 시책을 펼쳤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99, 「朝鮮後期 守令自備穀의 設置」, 『조선시대사학보』 9를 참조

58) 『승정원일기』 487책, 숙종 41년 1월 27일.

59) 『승정원일기』 487책, 숙종 41년 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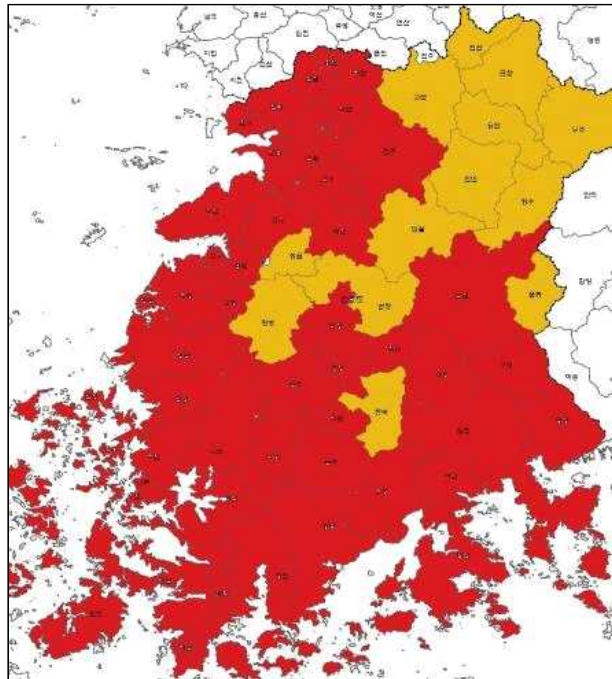
60) 務安縣監黃翼再段 爲政剛明 處事詳密 誠心撫恤 極意賑賑 戶籍紙及年分紙價 自官備用 魚産日次 間日進排 曾不點退 衙舍倉庫 一併修葺 不煩民力 軍器諸具 亦皆修治 善治善賑 實爲卓異是如爲白有矣(『승정원일기』 487책, 숙종 41년 1월 27일)

61) 이 역시 시상의 대상이었으나 앞서 감진어사의 서계로 인해 준직에 제수되는 상을 받아 추가로 상을 받지는 못했다(『승정원일기』 487책, 숙종 41년 1월 27일)

3. 순천 사창·향약의 시행과 賑廳의 설치

황익재가 순천부사에 임명된 1716년은 전국이 흉년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자연재해가 심각한 해였다. 경기, 황해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의 절반 이상이 재해가 심각한 우심읍으로 판정되었으며, 평안도와 함경도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았다고는 하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⁶²⁾ <그림 2>와 같이 전라도는 53개 고을 중 40읍이 우심읍, 나머지 13읍은 지차읍으로 판정되었고, 초실읍은 한 고을도 없었다.⁶³⁾ 지차읍으로 구분된 고을도 재해가 참혹하여 부세 건감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⁶⁴⁾ 사실상 전라도 전체가 흉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대응한 진휼 조치가 각 지역에 내려졌는데, 전라도는 신역·신공을 비롯하여 가을에 거두어야 할 환곡의 일부가 건감되었으며, 환곡의 모곡 중 절반은 진휼 재원으로 구획되었다.⁶⁵⁾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는 진휼이 시행될 수 있었다. 순천부 역시 우심읍으로서 진휼을 시행해야 할 지역 중 하나였다.



<그림 4> 1716년 전라도 지역의 재해 상황

황익재는 11월 10일에 하직한 뒤 순천부에 부임하자마자 진휼 업무에 착수했다. 무안현에서 재직하는 4년 중 3년 동안 흉년을 맞아 진휼을 시행했는데, 새로운 부임지에서도 시작부터 진휼을 시행해야 했다. 순천부의 재해가 심각했던 만큼 황익재는 순천부에 부임한 직후인 11월부터 기민들에게 진휼곡을 분배하였다.⁶⁶⁾ 순천부의 기민들이 해를 넘기기 힘들다고 판단

62) 『비변사등록』 69책, 숙종 42년 10월 10일.

63) 『어영청등록』 26책, 숙종 42년 10월.

64) 『비변사등록』 69책, 숙종 42년 10월 10일.

65) 『비변사등록』 69책, 숙종 42년 10월 10일.

66) 『華齋集』 卷7, 付祿 「年譜」.

하여 일찍부터 진휼곡을 나눠준 것이다. 당시의 진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무안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휼 사무를 주관했던 만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민을 구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1717년(숙종 43) 가을 농사의 작황은 괜찮은 편이었으나 연속된 흉년을 겪은 뒤였기에 민간의 형편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였다.⁶⁷⁾ 황익재는 진휼을 마친 뒤에 여러 번의 흉년 이후 피폐해진 고을을 정비하고, 곤궁한 府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썼다. 우선 순천부 내의 형편과 각종 폐막을 전라감사에게 전달하면서 부세 부담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연이은 기근과 잦은 수령 교체로 인해 순천부의 물력이 고갈되고, 백가지 폐단이 생겨나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畵弊와 그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⁶⁸⁾

<표 12> 순천부의 畵弊와 황익재의 요청사항

	畵弊	요청
1	-흉년으로 인해 공사채에 의존 -구환, 각종 신포를 거두기 어려움	-각년의 舊還 停捧 -북한산성 相換米 및 각 궁가의 留賑 곡물 退捧
2	-공사채의 폐단, 사채의 징수 엄금 -공채 準捧 불가	-전라감영 및 진휼청 대여 錢布 절반 停捧
3	-목화농사 흉작 -본색납 어려움	-병영,수영,각진포 防軍布를 2냥으로 代捧, -감영 대여 木疋 代錢納 -경아문 상납 군포 純錢納
4	-쌀을 징수하기 어려움 -겨울에 바다로 상납하기 어려움	3군문의 退捧保米 연기
5	-식년 군병 개도안 情費 과다 -紙筆墨價를 군병에게 징수	금년 개도안 내년 가을로 연기
6	-民小軍多의 폐단 -6,000여 호가 10100명의 군액을 충당	-창평 군액 49명을 還屬
7	-동궁의 도장이 수세하는 폐단	-동궁의 도장 수세 혁파
8	-사실과 다른 어염선세 징수	-파손된 염분, 선척 代定

<표 2>와 같이 그 내용은 대체로 흉년 이후 府民들의 사정이 어려워져 중앙의 각 아문, 군 문, 궁방에 바쳐야 할 환곡, 신포, 보미를 거두기 곤란하니 일부를 감면하거나 연기해달라는 것이었다. 황익재는 이와 같은 사안들을 전라감사에게 전달하면서 해당 내용을 중앙 관서에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서는 순천부의 공·사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⁶⁹⁾

「又論畵弊九條」에 따르면 순천부 경내 전답의 대부분은 궁방 혹은 사대부의 소유이며, 가난한 부류들은 값을 주고 경작할 땅을 구하고, 농사를 위해 필요한 종자와 소를 얻기 위해 빚을

67)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1월 12일

68) 해당 내용은 『華齋集』 권2에 수록된 「又論畵弊九條」를 참고하였다. 이 기록에서는 황익재 본인은 ‘府使’로 지칭하고 있으며, 문서를 받을 대상은 ‘使道(사도)’로 표현되는데, 내용 중에 ‘轉報’, ‘狀達’, ‘啓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는 전라감사로 추정된다. 당시 전라감사가 각읍의 폐막을 책자로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에 호응하여 황익재가 작성한 듯하다. 기록이 작성된 시점은 진휼과 관련하여 을미·병신년(1715·1716) 때의 일이 나오고, 곧바로 ‘今春’, ‘今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순천부에서 진휼을 마친 뒤인 1717년 봄 이후로 추정된다.

69)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조원래, 1985, 앞의 논문, 135~141쪽; 설현지, 2022, 앞의 논문, 234~235쪽).

져야 했다.⁷⁰⁾ 흉년에도 가을 수확의 절반은 전답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연이은 흉년을 겪은 뒤에는 수입은 없고 부채만 쌓이게 되어 가난한 백성들은 사실상 공·사채에 의존하고 있었다. 황익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흉년에 정퇴한 환곡이나 진흙에 사용한 상납미를 거둘 수 없으니 모두 停捧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⁷¹⁾

공·사채를 통해 식리를 취하는 문제는 흉년 이후 순천부의 가장 큰 폐단으로 떠올랐다.⁷²⁾ 순천부에서는 을미년(1715, 속종 41), 병신년(1716, 속종 42)에 진흙에 보태기 위해서 감영에서 돈 4,240냥, 무명 21동을 빌려왔다. 이 자원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진흙곡과 달리 ‘料辦’ 혹은 ‘料理’을 통해 ‘存本取剩’, 즉 잉여를 취해 진흙곡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원이었다. 황익재는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전포를 활용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부임한 이후 봄에는 전포를 市價에 따라 1냥 혹은 2斗를 지급한 뒤에 가을에 本錢 1냥을 납입케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1냥의 값이 봄에 비해 5~6배로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⁷³⁾ 아마도 1717년 작황이 좋아지면서 진흙을 시행하던 봄에 비해 곡가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동전값은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1냥의 값으로 2두를 받은 백성은 이제 1냥을 갚기 위해서 10~12두를 마련해야 했다. 백성들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틈을 타서 모리배들이 이익을 노리고 사채를 나눠주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이들은 춘궁기의 시기로 본전을 계산하고 月利 혹은 甲利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받을 때는 곡물로 거두어 갔다.⁷⁴⁾ 예를 들어 빌려줄 때는 ‘1냥=2두’로 계산해서 1냥을 빌려주고서는 받을 때는 ‘1냥=10~12두’로 계산해서 10~12두를 내게 한 것이다. 그 사이에서 5~6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전부 갚지 못하면 이자가 쌓여 본전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가난한 백성을 공갈해서 끝까지 받아내고자 하였다.⁷⁵⁾ 사채를 빌려주는 사람은 대체로 부유한 집안으로 세력이 커서 下戶의 殘民들은 앞으로 사채를 빌리지 못할 것이 두려워 관에 알리지도 못하였다.⁷⁶⁾

황익재는 이 같은 문제를 큰 폐단으로 지적하면서 빚을 진 자의 명단을 보고하도록 하고, 별도로 탐문을 지시하였다. 조정의 명령이 없더라도 마음대로 빚을 징수하는 자들을 엄히 다스리겠다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사채를 금단하는 시기에 공채를 모두 거둔다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2년간 감영에서 빌려온 전포와 중앙의 진흙청에서 내린 전포를 절반만 거둘 것을 요청하였다.⁷⁷⁾ 수령의 권한 아래 사채 징수를 금지하고, 한편으로는 감사에게 요청하여 공채 징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순천부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목화농사 흥작에 따른 신포·군포의 代錢納, 군액 조정, 국방의 도장 혁파 등을 요구하였다.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사안은 중앙조정에 보고되어 수용되기도 했다.⁷⁸⁾ 이는 연이은 흉년으로 궁핍해진 상황에서 府

70) 『華齋集』 卷2, 狀 「又論邑弊九條」.

71) 『華齋集』 卷2, 狀 「又論邑弊九條」.

72) 『華齋集』 卷2, 「又論邑弊九條」.

73) 『華齋集』 卷2, 「又論邑弊九條」.

74) 『華齋集』 卷2, 「又論邑弊九條」.

75) 『華齋集』 卷2, 「又論邑弊九條」.

76) 『華齋集』 卷2, 「又論邑弊九條」.

77) 『華齋集』 卷2, 「又論邑弊九條」. 진흙청에서 내린 전포는 1713·1715년에 진흙청에서 전라도에 貸下한 진흙 재원으로 짐작된다. 전라도 전체에 미 7천석, 전 2만냥이 내려졌는데, 순천부에 분배된 액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무상 지급이 아닌 ‘貸下’된 자원인 만큼 각읍에서 진흙청에 다시 갚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비변사등록』 70책, 속종 43년 11월 27일).

78) 당시 전라감사 홍치중은 흉년 이후 전라도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각종 부세 및 진흙청에서 빌린 전곡의 정퇴, 군포의 대전납 등을 요청하였다. 황익재 개인의 요청이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전라도

민들의 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황익재는 「사창절목」, 「향약절목」, 「진청절목」을 작성해 각 마을에 배포하였다.⁷⁹⁾ 앞선 활동이 순천부사로서 당장의 궁핍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사창·향약의 시행과 賑廳의 설치는 앞으로 발생할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먼저 황익재가 실시한 사창에 대해 살펴보자.⁸⁰⁾ 황익재는 「사창절목」 서두에 사창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라도 연해 지역은 10년 가까이 흉년이 이어지다가 이 해에 이르러 흉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곡가가 떨어졌는데, 황익재는 이와 같은 시기에 곡물을 마련해 두어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흉년을 대비할 방안으로 향촌에 설치하고자 한 것이 바로 사창이다.

순천부에는 황익재가 부임할 당시에 이미 몇몇 지역에 사창이 존재하고 있었다. 명칭은 사창이었지만 요역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 사실상 民庫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자의 사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순천 전체에 확대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향촌의 순후한 풍속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사창절목」에 따르면 새롭게 확대·개편될 사창은 ‘社首(尊位)-直月-保長-隊長’으로 이어지는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⁸¹⁾ 사수는 각리의 유력한 양반 1인을 차출하거나 존위가 겸하였는데, 관에서 임명하는 사창 운영의 최고책임자였다. 그 아래 各閭에는 직월 1인을 두어 양반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양반이 없는 마을일 경우에는 직월을 두지 않도록 했다. 보장과 대장은 직월의 지휘를 받는 직임으로 대장은 10호마다 한 명을 두어 소속 가호를 통솔하고, 보장은 마을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명의 대장, 즉 20호 이상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다. 만약 20호가 되지 않으면 인근의 2~3촌 혹은 4~5촌을 합쳐서 20호를 채운 뒤에 보장을 두도록 했다. 사수 이하 직월, 보장, 대장은 관에서 임명하지 않고 各閭의 공의에 따라 임명되는 직임이었다.⁸²⁾

일정 단위의 호를 묶어 책임자 혹은 통솔자를 두고, 그 위에 상위 직임을 두는 조직 구성은 명칭이나 규모에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른 사창·향약론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예를 들어 이유태는 5가를 統으로, 25가를 小統, 100가를 中統, 200가를 大統으로 묶어 각각 統主, 統正, 統長·直月, 上有司를 두어 통솔하도록 했으며, 전체적으로 사창을 관장하는 직임으로는 도약정, 부약정, 도직월 등을 두었다.⁸³⁾ 홍중삼 역시 5가의 통수·통장을 말단에 두고 그 위로 도약정, 부약정, 유사 등을 두어 사창·향약을 운영하는 구상을 제시했다.⁸⁴⁾ 17세기 후반 전국적으로 시행된 오가통제도를 변용하여 사창·향약 조직과 연계시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순천의 사창 조직의 특징은 그 구성원을 순천부민 전체로 상정했다는 점이다.⁸⁵⁾ 여타의 사창·향약론에서는 대부분 立約者, 즉 향약에 참여한 사람만 사창곡을 받을 수 있었고, 외부인은 제외되었다. 외부인이 새로 향약에 들어오거나 하면 일정한 액수의 사창곡을 내고 향

일대의 수령들이 유사한 요청을 제기한 끝에 중앙조정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호조에 바칠 세곡이나 노비신공, 전병선 저치미 등은 정퇴되었으나 강도·북한산성 군항미, 진흥청 賸下錢穀 등에 대한 정퇴 요청은 허락되지 않았다(『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1월 27일).

79) 『華齋集』 卷7, 「年譜」.

80) 『華齋集』 卷6, 「社倉節目」.

81) 『華齋集』 卷6, 「社倉節目」.

82) 『華齋集』 卷6, 「社倉節目」.

83) 李惟泰, 『草廬集』 卷2, 「己亥封事」.

84) 洪重三, 『鄉約通變』 卷3, 「社倉鄉約」.

85) 설현지, 2022, 앞의 논문, 237쪽.

원들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반면 순천 사창은 지역 내 모든 인원이 사창·향약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수령의 주관 아래 향촌 구성원을 재편성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순천부 내 마을의 규모, 형편, 내부 사정에 따라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부분 향촌 내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했다.

다음으로 사창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자. 황익재는 각리에서 관에 납부해야 할 곡물을 덜어 내어 사창의 초기 자본을 마련하였다. 일부 사창·향약론자들이 민간에서 곡물을 모집해 사창의 원곡을 마련하고자 한 것과 달리 황익재는 관에서 주도하여 사창곡을 확보한 것이다.⁸⁶⁾ 그중에서도 사창의 초기 자본은 관에 납부해야 할 修理租와 放箭租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⁷⁾ 본래 순천부 내에서는 修理租·放箭租로 5승의 곡물을 거두고 있었던 듯한데, 두 세목은 양반에게는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익재는 각 마을에서 곡물을 수합해 사창을 설치하는 때에 양반도 곡물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신분을 막론하고 5승의 곡물을 거두도록 했다.⁸⁸⁾ 순천부의 사창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府民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만큼 양반에게도 동일하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사창곡은 앞서 설명한 사창 조직의 관리 아래 운영되었는데, 各閭에 임명된 직월·보장·대장이 사창곡의 수합과 분배를 담당하였다. 직월이나 보장이 대장에게 사창곡을 분배하면, 대장이 각 대에 소속된 10호에게 분배하였으며, 사창곡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사창곡을 거둘 때 隊內에 민호가 도망가거나 사창곡이 사라진 경우에는 해당 隊에 소속된 10호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했다.⁸⁹⁾ 오가통제를 활용해 환곡이나 부세를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창곡의 운영 방식은 ‘料理’와 ‘取息’으로 요약된다. ‘料理’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나 마을 내에서 편의에 따라 운용하도록 했다. 후술하겠지만 아마도 시세 차익을 이용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뜻하는 듯하다. ‘取息’은 민호에게 사창곡을 분급한 뒤에 이자를 더해 거두는 것으로 환곡의 모곡을 거두는 방식과 유사했는데, 이때 이자율은 長利를 넘지 않도록 했다. ‘料理’와 ‘取息’의 방식은 各閭에 맡겨진 만큼 그 결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料理’·‘取息’을 잘하지 못해 잉여가 적으면 보장과 대장을 처벌하는 규정도 수록해 놓았다.⁹⁰⁾ 고정된 액수를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의무적으로 잉여를 마련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料理’·‘取息’을 통해 잉여를 창출하게 한 이유는 사창 운영의 일차적인 목적이 官役을 책임하는데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황익재가 부임하기 전부터 순천부의 일부 마을에는 사창이 설치되어 요역을 책임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익재는 이를 순천부 전체에 확대 적용하면서, 기존 사창의 기능을 그대로 두었다. 관에서 초기 자본을 마련해 준 뒤에 향촌 내에서 ‘料理’ 혹은 ‘取息’을 통해 잉여를 확보하여 관역 혹은 요역을 수행할 용도로 활용케 한 것이다. 18세기 초 무렵 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庫廳契 등 다양한 형태로 지방의 각종 잡역에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황익재 역시 사창을 통해 순천부 내 각종 잡역을 충당케

86) 李惟泰, 『草廬集』 卷2, 「己亥封事」; 洪重三, 『鄉約通變』 卷3, 「社倉鄉約」.

87) 순천부에서는 관용으로 쓰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 바치도록 하였는데, 이후 연해 7면에 放箭租를 내게 하여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무역하였다(『湖南邑誌』, 『新會昇平誌』). 修理租는 관청 수리를 위해 거둔 부세로 추정되는데, 『賦役實總』에 따르면 순천에서는 前營에 修理浦陳價錢 90냥을 납부하였다(문용식, 2009, 「17·18세기 사창을 통한 지방관의 재정 보용 사례」, 『역사와 현실』 72, 87쪽).

88) 『華齋集』 卷6, 「社倉節目」.

89) 『華齋集』 卷6, 「社倉節目」.

90) 『華齋集』 卷6, 「社倉節目」.

한 것이다.⁹¹⁾

다만 순천부 사창의 특징은 官役 혹은 徭役 책응에 그치지 않고 흉년을 대비하는 기능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사창은 풍흉에 따라 운영 방침이 달라졌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우선 풍년에는 원하지 않더라도 경내의 민호 모두가 의무적으로 長利를 적용하여 사창곡을 받아야만 했다. 앞서 평소에는 取息을 하더라도 長利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풍년에는 최대의 이자율인 長利를 적용하였으며, 모든 민호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사창곡을 분배하도록 하였다.⁹²⁾ 풍년에도 관역·요역을 책응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얻는 잉여로는 우선 관역을 충당하고, 그 외에 남는 것이 있다면 주자의 사창법을 적용하여 매석 당 2斗의 利息을 거두도록 했다.⁹³⁾

흉년에는 賑廳法을 적용하여 소흉년에는 절반인 1두만 거두고, 대흉년에는 利息은 제외하고, 本穀만 거두도록 했다. 대흉년에도 본곡을 거두게 한 것은 진휼곡으로 분배하기 위해서였

<표 13> 풍흉에 따른 사창 운영 방식

	풍년	흉년
수입	料理·取息	料理·取息
지출	各項用下	各項用下+賑貸
잉여비축	2斗	1斗 or 0

다. 본곡을 거둔 뒤에 마을의 公議에 따라 기민의 등급을 나누어 차례대로 賑貸하도록 하였다.⁹⁴⁾ 이때 약간의 곡물을 남겨두어 사창곡이 고갈되지 않도록 했으며, 관에서 마음대로 다른 마을로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관의 개입을 줄여 마을 내의 사창곡이 해당 마을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황익재가 시행한 사창의 일차적인 기능은 관역·요역 충당에 있었다. 사창곡 운영에 있어서 ‘料理’, ‘取息’이 강조되는 이유도 잉여를 남겨야만 관역·요역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순천부에 본래 존재하던 사창의 기능이기도 했으며, 이를 위해 풍년에도 강제로 분배하는 규정을 수록하였다. 다만 관역을 보충하고 남는 곡물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도록 하였으며, 풍흉에 따라 거두는 곡물의 액수를 조정하였다. 풍흉을 막론하고 각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관역·요역을 충당하되 풍년에는 비축 곡물을 추가로 확보하여, 흉년에 진휼곡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 사창곡의 분급·수취, ‘料理’의 방식, ‘取息’ 시 이자율 등은 각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흉년에 사창곡을 진휼곡으로 분배할 때도 관의 개입없이 마을의 공의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관역을 보충하는 기존의 순천 사창의 기능을 유지하되 이를 순천부 전체에 확대·적용하면서 주자의 사창제도가 지향하는 향촌 내 운영이나 진휼의 기능을 추가한 셈이다. 황익재에 의해 확대·개편된 사창은 관의 주도로 운영되는 官倉에 향촌의 자율적 운영을 추구하는 주자의 社倉이 더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⁹⁵⁾

이 외에 사창곡의 분급·수취, ‘料理’의 방식, ‘取息’ 시 이자율 등은 각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흉년에 사창곡을 진휼곡으로 분배할 때도 관의 개입없이 마을의 공의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관역을 보충하는 기존의 순천 사창의 기능을 유지하되 이를 순천부 전체에 확대·적용하면서 주자의 사창제도가 지향하는 향촌 내 운영이나 진휼의 기능을 추가한 셈이다. 황익재에 의해 확대·개편된 사창은 관의 주도로 운영되는 官倉에 향촌의 자율적 운영을 추구하는 주자의 社倉이 더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⁹⁵⁾

91) 18세기 이후 잡역 문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대응에 대해서는 김덕진, 1999,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國學資料院을 참조.

92) 『華齋集』卷6, 「社倉節目」.

93) 『華齋集』卷6, 「社倉節目」.

94) 『華齋集』卷6, 「社倉節目」.

95) 황익재의 순천 사창은 기본적으로 주자사창을 변용한 사례 중 하나로 이해된다. 다만 ‘官穀’을 바탕으로 원곡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수령에게 보고된다는 점에서 관 혹은 수령 주도의 사창으로 평가된다. 반면 2할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했던 여타의 사창과 달리 5할(長利)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강제적으로 분급했다는 점에서 사창제도의 변질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나아가 사창곡이 官役으로 쓰였던 만큼 사창 운영의 주요한 목적이 지방재정을 보충하는데 있었다는 평가도

결과적으로 황익재가 기존의 사창을 변용하여 확대·적용함으로써 순천 사창은 관역의 책과 흉년 대비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연이은 흉년을 맞이하여 여러 차례에 진출 업무를 수행한 지방관으로서 황익재는 순천부의 사창을 활용하여 향촌 내에서 자체적으로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황익재는 사창을 설치한 해에 향약을 실시하였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사창·향약론자였던 유형원은 향약을 시행한 다음에 사창을 설치해 운영해서 향약과 사창이 표리를 이룬 뒤에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⁹⁶⁾ 홍중삼은 주현향약을 시행한 뒤에 사창으로서 養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⁹⁷⁾, 이유태 역시 향약 내에서 운영되는 사창법을 제기하였다.⁹⁸⁾ 황익재가 사창을 설치하면서 향약을 시행한 이유도 앞선 논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창·향약을 표리관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황익재의 향약에는 순천부의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있었다. 황익재는 「향약절목」을 통해 향약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⁹⁹⁾ 여기에서 기근의 여파로 사람들이 恒心이 사라져 교화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기근으로 인해 恒産이 사라지면서 향촌의 풍속이 인색해졌다는 것으로 앞서 향촌 내에서 각종 사채, 이식 행위가 만연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기근 이후 인심이 인색해지고 牟利가 만연한 향촌의 상황을 타개할 대책으로 향약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황익재는 옛 현인들이 정한 향약규례와 순천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洞約의 조목들을 참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향약절목」을 작성하였다.¹⁰⁰⁾ 순천부 내에서는 향촌 내에서 이미 동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반으로 주자 이래로 계승되어 온 향약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향약절목」으로 확대한 것이다. 「향약절목」의 구성은 여타의 향약과는 차이가 있는데, 향약의 4대 강령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가운데 「과실상규」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17개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향약절목」의 큰 틀은 퇴계 이항의 「鄉立約條」를 따른 듯하다.¹⁰¹⁾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②~⑫ 조항은 부모, 형제, 친척, 부부, 친구, 이웃 등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아 향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다. ‘父母不順者’, ‘兄弟相關者’, ‘家道悖亂者’ 등의 표현은 「鄉立約條」와 일치하며, 상·하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둔 점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형제간의 다툼에서 ‘형이 그르고 아우가 옳을 경우(兄曲弟直)’에는 고르게 벌을 내리고, ‘형이 옳고 아우가 그를 경우(兄直弟曲)’에는 아우에게만 벌을 내리고, ‘옳고 그름이 상반인 경우(曲直相半)’에는 형을 가볍게, 아우를 무겁게 처벌한다는 등의 동일한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항의 「鄉立約條」를 그대로 수록한 것은 아니다. 「鄉立約條」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총 28가지 경우를 경중에 따라 極罰·中罰·下罰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상·중·하를 나누어 처벌하도록 했다. 「향약절목」에서는 28가지 중 14가지만 수록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서는 여러 경우를 합쳐서 처리 방식을 다루기도 했다. 「鄉立約條」의 틀을 따르되 자신의 판단에 따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순천 사창이 기존의 관역을 충당하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상적인 제도인 주자사창의 운영 원리를 추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96) 柳馨遠, 『礪溪隱錄』 卷3, 「鄉里」.
 97) 洪重三, 『鄉約通變』 卷3, 「社倉鄉約」.
 98) 李惟泰, 『草廬鄉約』 「社倉法」.
 99) 『華齋集』 卷6, 「鄉約節目」.
 100) 『華齋集』 卷6, 「鄉約節目」.
 101) 李滉, 『退溪集』 권 42, 「鄉立約條序」.

라 내용을 변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처벌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처리 방법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표 14> 「鄉立約條」와 「鄉約節目」의 비교

번호	구분	「鄉立約條」	「鄉約節目」
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로워 사람들이 흠잡는 말이 없는 자	·	관에 알릴 것
	친족과 화목하고, 처자식에게 모범이 되어 가행을 칭찬할만한 자		
②	부모에게 불순한 자	極罰	고쳐지지 않으면 관에 보고
③	형제가 서로 싸우는 자	極罰	里中處置
④	가도를 어지럽히는 자	極罰	(鄉罰)
⑤	친척과 화목하지 않는 자	中罰	(鄉罰)
⑥	어른을 업신여기는 자	極罰	(鄉罰)
⑦	이웃과 화합하지 않는 자	中罰	(鄉罰)
⑧	동무들과 서로 치고 싸우는 자	中罰	무거우면 校院에서 처벌 가벼우면 洞中處置
⑨	수절하는 孀婦를 유인하여 더럽히는 자	極罰	관에 알릴 것
⑩	망녕되어 위세를 부려 관을 흔들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極罰	무거우면 관에 알릴 것 가벼우면 洞中處置
	관가의 임명을 받고 공무를 빙자하여 폐해를 만드는 자	中罰	
⑪	혼인과 상제에 아무 이유없이 시기를 넘기는 자	中罰	각동의 편의에 따라 도울 것 거행하지 않는 자는 중벌
	질병과 환란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 자		
⑫	집강을 업신여기며 향령을 따르지 않는 자	中罰	가벼우면 향벌 시행 무거우면 관에 알릴 것
	향론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⑬	훈장을 정해 날마다 권장하는 것은 후학을 권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우의 유익함을 얻을 것이다. 나이가 많고 학식이 높은 선비로 각리의 훈장을 가려 정해서 가을·겨울에 글을 외우고, 봄·여름에 글을 지어 각각 재주에 따라 각각 그 업으로써 매달 삭망에 읽고 짓는 것을 시험하여 격려하고 권장한다. 상벌이 없을 수 없으니 훈장이 편의에 따라 거행한다.		
⑭	죄에 걸려들었는데 스스로 신원할 수 없는 자는 상하가 모두 나아가 도와준다.		
⑮	양반이 사는 마을은 都·副正, 直月을 가려 정하고, 상한이 사는 마을은 傳令有司를 두어서 거행한다.		
⑯	上罰은 答 30대, 中罰은 答 20대, 下罰은 答 10대이고, 양반이 상벌이면 관에 고하고, 중하 벌은 奴를 때린다. 常漢 중 늙고 병든 자는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없으면 속전을 거둔다.		
⑰	下罰을 당한 자가 다시 여기면 中罰, 중벌을 당한 자가 다시 여기면 上罰에 처하고, 상벌을 당한 자가 다시 여기면 향적에서 삭제한다. 향적에서 삭제된 자는 잘못을 고친 뒤에 벌을 풀어준다.		

향약의 운영 주체는 양반이 있는 곳에서는 都正, 副正, 直月이었으며, 常漢들이 사는 곳에서는 傳令有司를 두도록 했다(⑮).¹⁰²⁾ 여기에 各里에 訓長을 두어 학문을 권장하도록 했다(⑬). 사창과 마찬가지로 향약 역시 里 단위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 조직은 별도로 두었다.¹⁰³⁾ ‘直月’이라는 직임이 「사창절목」, 「향약절목」에서 동시에 나타나는데, 별개의 조직

102) 『華齋集』 卷6, 「鄉約節目」.

103) 「향약절목」에는 ‘里中處置’, ‘洞中處置’라는 표현만 나올 뿐 명확한 운영 단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의 洞約을 기반으로 시행했으며, 各里에 훈장을 두고, 里 단위로 운영되는 사창과 연계했다

을 두었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일부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⁴⁾ 향약 조직의 임무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양반사족을 중심으로 사창이나 향약을 운영하고자 한 점은 명확하다.

「향약절목」에서 다루는 대부분 사안은 ‘洞中’이나 ‘里中’으로 표현되는 ‘鄉中’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③,⑧,⑩). 황익재는 형제들끼리 이익을 다투거나 齋任들이 서로 다투어 관에 소송하는 지경에 이르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관에 이르기 전에 향촌 내에서 曲直을 가려 처벌하도록 했다. <표>에서 ‘鄉罰’로 표기한 부분은 구체적인 처리 주체가 드러나지는 않으나 다른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향중’에 맡긴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④,⑤,⑥,⑦).

이때 처벌은 상·중·하로 나누어 각각 30대, 20대, 10대로 규정하였고, 양반이 上罰을 받을 경우에는 관에 알리고, 中·下罰을 받을 경우에는 노비가 대신 태를 맞았으며, 상한은 높고 병든 자에 한해서 아들이 대신 태를 맞거나 아들이 없으면 속전을 거두도록 하였다(⑩).¹⁰⁵⁾ 사안에 따라서도 누구를 벌할지 규정하였는데, 대체로 윗사람이 잘못해도 고르게 벌을 내리고,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아랫사람만 처벌하였으며, 양측이 고르게 잘못된 경우는 윗사람을 가볍게, 아랫사람을 무겁게 처벌하였다. 엄격한 신분 및 상하의 질서를 반영한 처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향촌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관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였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관에 알리도록 하였다. 향촌 내에서 운영되는 향약이더라도 죄가 무겁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에서 개입을 통해 향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웃간의 불화를 다루면서 私債와 관련한 조항을 수록했다는 점이다(⑦). 황익재는 기근 이후로 이웃 간에 서로 돕는 풍속이 사라지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습속이 만연하여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⁶⁾ 이에 사적으로 돈이나 곡물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長利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과도하게 거둔 이자를 속공시키고, 이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수록했다.¹⁰⁷⁾

앞서 황익재는 연이은 흉년 이후에 순천부의 사채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한 바 있었다. 「향약절목」에 사채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수록하여 과도한 사채 징수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향촌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사창곡을 운영하여 민간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채 징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의도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통의 향약에서 보기 드문 요소로 「향약절목」이 순천부의 현실 문제를 반영해 작성된 결과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여타의 사창·향약론과 마찬가지로 순천 사창·향약 역시 상호 연계 속에서 운영되었다. ‘직월’이라는 직임이 사창·향약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 외에도 「사창절목」에는 각대의 10호 중에서 「향약절목」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책임자인 대장·보장을 논죄한다는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¹⁰⁸⁾ 사창·향약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황익재의 표현을 빌리자면 향약은 연이은 기근으로 恒心이 사라진 백성들을 교화하는 장치였으며, 사창은 恒産을 마련해 향촌의 순후한 풍속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수단이었다. 황익재에

는 점 등을 통해 洞里 단위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4) 설현지, 2022, 앞의 논문, 240쪽.

105) 『華齋集』 卷6, 「鄉約節目」.

106) 『華齋集』 卷6, 「鄉約節目」.

107) 『華齋集』 卷6, 「鄉約節目」.

108) 『華齋集』 卷6, 「社倉節目」.

의해 새롭게 시행된 사창·향약은 연이은 기근 이후 무너진 향촌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다시 발생할 기근에도 향촌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었다.

황익재는 향촌 내에서 사창·향약을 시행함과 함께 관아에는 賑廳을 신설하였다.¹⁰⁹⁾ 사창·향약이 향촌 내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면 賑廳은 관 차원에서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였다. 황익재가 부임하기 전부터 순천부에는 진청이 존재했으나 곡물값이 떨어진 때를 이용하여 기존에 남아있는 賑廳의 재원과 별도로 마련한 자원을 합쳐 賑廳 운영을 개편하였다. 새로운 賑廳의 운영 방식은 「진청절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¹¹⁰⁾

먼저 賑廳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는 사창·향약과 별도로 정해졌다. 都宥司 1원, 都監 1원, 監官 1원, 色吏 1원, 庫子 1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도유사와 도감은 鄉中의 회의를 통해 관에 후보를 올리면 관에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그중 도감은 大同都監을 예겸하도록 했는데, 대동도감은 大同倉을 관리하는 직임으로 추정된다.¹¹¹⁾ 감관, 색리, 고자는 관에서 가계 사정이 넉넉한 자를 별도로 가려서 임명하였다. 사창 조직은 社首를 제외하고 향촌 내의 공의에 따라 임명되었다면 진청 조직은 대체로 관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향촌 내에서의 자체적인 운영을 도모한 사창과 달리 진청은 관의 주도로 운영되는 기구임을 보여준다.

진청의 초기 자본은 미 100석, 조 300석으로 규정되었는데, 동전이나 포, 어물 등은 제외하였다. <표 5>에는 「진청절목」을 토대로 진청의 운영 방식을 정리하였다. 진청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사창과 동일한 ‘料理’와 ‘取耗(取息)’이었다.¹¹²⁾ 우선 ‘料理’는 곡가가 쌀 때 매입하고, 비쌀 때 발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이는 조선 초기에 운영된 常平倉의 운영법과 동일하다. 풍흉 혹은 계절에 따른 곡가 차이를 이용하여 물가조절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料理’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비축 곡물을 마련하는 구조였다.¹¹³⁾

다만 ‘料理’하는데 활용되는 곡물은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중간에 사라질 여지가 있었다.

<표 15> 賑廳의 운영 방식

	시기	매매	효과
料理	穀價 ↓	매입	곡물 비축, 시세 차익
	穀價 ↑	발매	물가 안정, 시세 차익
取耗 (取息)	元數	耗穀	이자율
	3000석 이하	매석 7.5斗	50%
	3000석	매석 2斗	13.3%
	5000석	매석 3升	2%

중간 실무자에 의해 ‘농간’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곡물을 매매할 때마다 도감과 감관은 관에서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최종 책임자인 도유사는 매월 회계 장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도유사 이하의 임원은 1년 단위로 교체함으로써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만약 교체하는 과정에서 포흠이 적발되면 곡물을 관리하는 도감에게 절반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실무

109) 황익재가 순천부사로 재직할 때 賑廳을 설치한 것은 확인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기록이 상이하다. 「사창절목」에 따르면 賑廳은 사창을 만들기 전에 이미 신설되었으나 「年譜」에는 1717년(숙종 43)에 사창을 설치하고, 이듬해인 1718년(숙종 44)에 賑恤廳을 세웠다고 되어있다. 「사창절목」, 「진청절목」의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창과 진청은 거의 동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순천에서 한 차례 진흥을 시행하고, 사정이 조금 나아졌을 때 다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동시기에 사창·진청·향약 등 여러 층위의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창절목」의 내용을 따르고자 한다.

110) 『華齋集』 卷6, 「賑廳節目」.

111) 순천부에서는 大同倉을 주관하는 담당자로 大同都監 2인을 두었는데, 그 중 한 명을 賑恤倉都監이 예겸한 것으로 보인다(『호남읍지』 8책, 순천).

112) 『華齋集』 卷6, 「賑廳節目」.

113) 조원래, 1985, 앞의 논문, 22쪽.

를 맡은 감관, 색리, 고자에게 징수해 내도록 했다.¹¹⁴⁾

사창과 달리 진청은 운영의 일차적인 목적이 흉년에 대비할 진자를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는 점이다.¹¹⁵⁾ 황익재는 ‘料理’에 필요한 미·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분급하여 耗穀을 거두도록 했다. 곡물 매매를 통해 얻는 이익 외에도 耗穀 수입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이자율은 전체 곡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진청곡의 수가 적은 초기에는 이자율을 長利(50%)로 적용하여 규모를 늘리고자 했다. 이후 곡물의 총수가 3천 석에 이르면 사창법에 따라 매석 2두(13.3%)만을 거두도록 했으며, 5천 석에 이르면 매석 3승(2%)으로 낮추었다. 어디까지나 흉년에 사용할 비축 곡물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둔 만큼 어느 정도 곡물이 확보되면 이자율을 대폭 낮추어 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賑廳의 곡물은 묵은 양식이 고갈되고 새로운 곡식이 나오기 아직 나오지 않은 때인 6~7월 사이에 분급하여 12월 내에 남김없이 거두도록 규정하였다.¹¹⁶⁾ 모곡을 징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賑貧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지방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환곡을 운영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민간에 분급된 곡물은 반드시 환수해야만 의미가 있었다.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면 흉년에 진흙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흉년이 닥치면 그 정도에 따라 모곡의 절반 혹은 전체를 감면해 주었으나 원곡 자체를 감면해주는 규정은 수록하지 않았다.

원곡을 확보하기 위해 황익재는 재편된 향촌 조직을 동원하였다. 앞서 사창곡 운영을 담당하는 ‘보장-대장-호’로 이어지는 조직을 賑廳의 곡물을 분배하고 거둘 때도 활용한 것이다.¹¹⁷⁾ 관에서 곡물의 총수에 맞추어 보장에 지급하면, 보장이 각 대장에게 분배하고, 대장은 소속 대의 10호 중 원하는 자를 추려서 곡물을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분배된 곡물을 거둘 때는 보장·대장이 수합하여 관에 납부하도록 했으며, 만약 도망가거나 사망한 자가 생기면 각 隊에서 부족분을 마련하도록 했다.¹¹⁸⁾ 사창곡과 마찬가지로 진청의 곡물을 공동으로 부담케 하여 원곡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확보된 진청의 곡물은 흉년에 진흙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조선시대 사창제를 주장한 논자들은 대개 환곡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환곡제의 혁파와 그 대안으로서 사창제의 시행을 주장하거나 환곡제와 별개로 관의 개입이 배제된 향촌 내에서의 진흙책으로서 사창제를 논하였다.¹¹⁹⁾ 반면 황익재는 관 차원에서 진청을 운영하여 흉년에 진흙곡으로 사용할 곡물을 비축하고, 향촌 내에도 각리마다 사창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⁰⁾ 진청과 사창은 운영 주체 및 목적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두는 별도의

114) 『華齋集』 卷6, 「賑廳節目」.

115) 읍지 자료에서는 황익재가 설치한 賑恤倉(賑廳)을 매년 분급해 모곡을 취해서 진자를 마련하는 기구로 명시하고 있다. 진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料理’보다는 ‘取耗’가 주요한 운영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호남읍지』 8책, 순천).

116) 『華齋集』 卷6, 「賑廳節目」.

117) 송양섭, 2021, 앞의 논문, 1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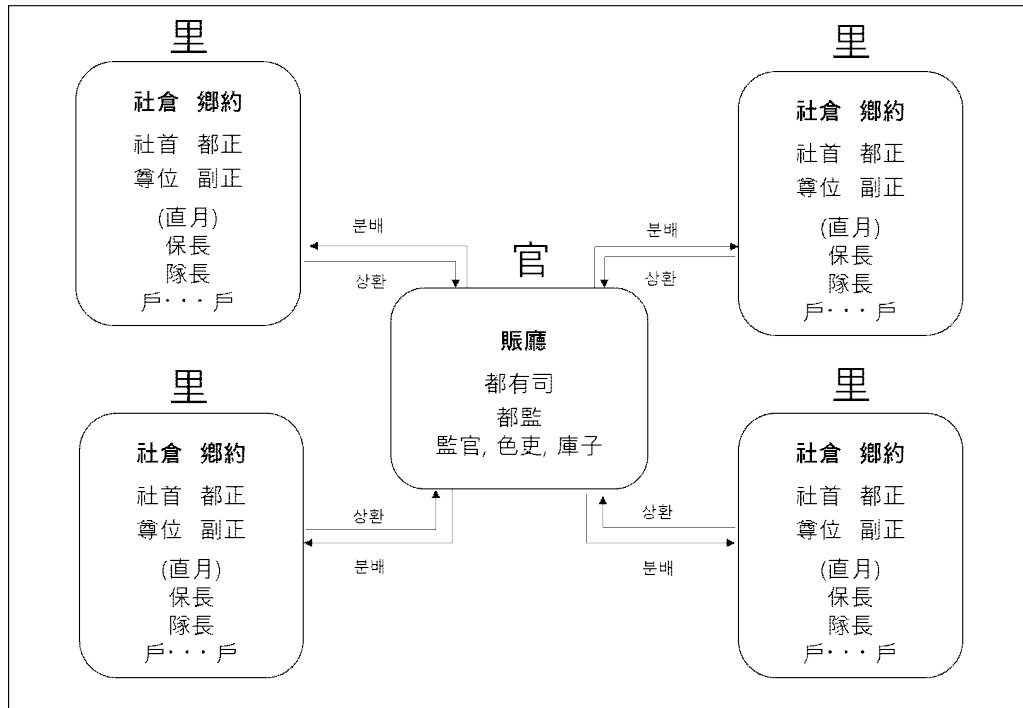
118) 『華齋集』 卷6, 「賑廳節目」.

119) 이단하의 경우는 사창제를 통해 국가재정의 확보를 도모하기도 했다(양진석, 1998, 「17세기 후반 李端夏의 社倉制 實施論」, 『한국문화』 20).

120) 社倉-賑廳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사창과 진청을 별도의 창고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그 가운데 환곡제를 혁파하고 사창·진청을 설치해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입장과 환곡은 유지하되 사창·진청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뉜다. 반면 하나의 창고에 곡물을 저장하고 풍흉에 따라 사창법·진청법을 적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현직 지방관이었던 황익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곡을 마음대로 혁파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창·진청을 환곡제와 함께 운영된 제도로 이해하였다. 순천부 백성들은 환곡에 더해 사창곡과 진청곡을 받아야 했던 것

제도였지만 곡물을 분배하고 거두는 단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흉년에 대비할 곡물을 마련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순천부 내의 사창·향약·진청의 운영체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¹²¹⁾



<그림 5> 순천 사창·향약·진청의 운영체계

황익재의 구상에 따르면 순천부의 모든 주민은 ‘保長-隊長-戶’로 이어지는 閭隊 조직으로 편제되었다. 향촌 내의 하부 조직을 기반으로 리마다 사창·향약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각각 향촌의 공의에 따라 임명된 ‘社首·尊位’, ‘都正·副正’이 총괄하였다. 사창을 통해서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官役을 충당하고, 흉년에 대비할 비축 곡물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향약을 통해서는 향촌 내에서 발생하는 분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향촌 내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했던 만큼 각 마을의 사정에 따라 사창·향약 조항이 수정될 수 있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관의 개입을 받는 형태였다. 사창곡의 현황은 매년 관에 보고해야 했으며, 향촌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아에는 흉년에 대비할 진흙곡을 마련하고자 賑廳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물가조절 및 곡물 비축의 기능을 수행하고, 흉년에는 비축된 곡물을 진흙곡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賑廳穀의 관리는 관에서 주관했지만 분배와 상환 과정에는 ‘保長-隊長-戶’로 편제된 향촌의 하부 조직이 동원되었다. ‘保長-隊長-戶’로 이어지는 향촌 조직은 향약의 통제를 받으며 사창곡·진청곡을 분배·상환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익재는 순천부민 전체를

이다. 이는 황익재의 의도와 달리 사창·진청곡 운영으로 백성들의 부담이 더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창·진청의 조직 구성이나 운영 목적 및 방식 등이 절목 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별도의 기구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21) 황익재의 구상은 유형원이 주장한 상평창·사창 운영과 흡사한 구조로 이해된다(최주희, 2022, 앞의 논문, 187쪽). 다만 사창을 통해 관역을 충당하고, 閭隊 조직을 활용해 사창·향약·진청을 운영하고자 한 점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閭閻 조직으로 편제하고 이를 사창·진청·향약 운영의 중심축으로 활용함으로써 군현 차원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황익재의 구상은 주자 사창·향약을 순천부의 현실에 맞게 변용한 결과이자 연이은 흉년에 진흥 활동을 전개하면서 흉년의 여파를 몸소 경험한 지방관이 불안정한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향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황익재의 시책은 그가 순천부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임자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후대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제도로 기억되었다.¹²²⁾ 특히 순천 지역에서는 각 단위별로 鄉約·洞約을 운영하거나 진흥을 위해 사창·사환제를 실시할 때 황익재의 사창·향약을 전범의 하나로 삼았던 만큼 지역 내의 영향력은 19세기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¹²³⁾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방관이 군현 내에서 시행한 흉년 대비책이자 진흥책의 사례로 황익재의 사창·향약을 살펴보았다. 18세기 초 전라도 연해 지역에 연이은 흉년이 발생한 가운데 황익재는 무안현감, 순천부사, 영광군수로 재직하면서 가는 곳마다 진흥을 시행해야 했다. 무안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곡물을 옮겨 오거나 사적인 재산을 털어내 진흥을 이어갔으며, 그 외에도 지역의 민폐를 제거하여 민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그의 진흥 활동은 순천부에서도 이어졌다. 순천부사로 임명된 직후부터 진흥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진흥을 마친 이후에는 연이은 흉년을 겪은 순천부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감영에 부세 견감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황익재는 사창·향약을 실시하고 진청을 설치해 운영하였다. 이는 연속된 흉년을 경험해 온 지방관이 무너진 향촌의 질서를 회복하고 향후의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생각된다. 각 마을 단위로는 사창·향약을 운영하여 향촌 내에서 흉년에 대비하고, 향촌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관청에는 진청을 개편하여 흉년에 활용할 진흥 자원을 확보하였다. 사창·향약을 통해 기근 이후 飢饉이 만연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순후한 풍속을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사창·진청을 운영하여 공사의 영역에서 또다시 이어질 흉년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황익재가 시행한 사창·향약·진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순천부 내에 존재하던 기구나 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순천부에서 관역을 충당하던 사창에 주자 사창의 운영 방식을 접목하여 진흥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마을별로 운영되던 洞約을 확대하여 ‘과실상규’ 항목을 중심으로 향약으로 확대하였다. 진청 역시 기존에 순천부에 존재하던 진청의 재원을 활용하되 상평창의 원리와 사창법을 결합시켜 운영하였다. 이상적인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용하여 실현 가능한 형태로 구현한 셈이다. 이러한 특징은 황익재의 지방관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황익재와 여러 사창·향약론자와의 차이는 그가 현직에 있는 지방관이었다는 점이다. 황익재는 국가 전체의 개혁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순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의 운영안을 제시해야 했다. 그만큼 기존에 논의되던 사창·향약론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특징은 지역민 전체를 재편하여 사창·향약·진청 운영에 참여시켰다는 점이다. 보통

122) 『順菴集』 卷26, 「通政大夫鍾城都護府使白華齋黃公行狀」; 『立齋集』, 卷39, 「府使華齋黃公墓碣銘」. 다만 賑廳은 후대의 읍지 자료에도 꾸준히 기록이 나타난다.

123) 송양섭, 2021, 앞의 논문, 130~133쪽.

의 사창·향약론에서는 그 대상을 立約者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황익재는 강제적으로 지역민 전체를 ‘保長-隊長-戶’로 이어지는 향촌 조직에 편입시켰으며, 이는 사창·향약·진청 운영의 핵심축으로 작동했다. 이와 같은 지역민 편제 역시 지역 내 호를 파악·통제해야 하는 지방관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양역변통 과정에서의 호에 대한 파악 시도, 오가통제도의 실시, 호 단위로 운영되는 환곡제도 등의 국가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민 전체를 편제하여 향약을 운영하는 방식은 19세기에 자주 나타난다. 특히 19세기 말에는 동학군에 대응하여 도 혹은 군현 단위로 향약을 실시하고, 인보 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하였다.¹²⁴⁾ 본고에서는 황익재의 사례만을 다루었으나 향약의 시행과 인보 조직의 연계가 18·19세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듯하다.

124) 이광우, 2015,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현영의 향약 시행과 그 성격 - 19세기 후반 관찰사 주현향약(州縣鄉約)의 한 사례 -」, 『인문학논총』 39; 이광우, 2018,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유림의 향약 시행」, 『민족문화논총』 68; 황재영, 2021, 「1893년 순창군의 향약 실시와 인보조직의 강화」, 『한국사연구』 192; 한미라, 2021, 「19세기 말 향촌지배질서 위기에 대한 대응 양상 - 전라도 龍潭鄉約을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황기준, 2021, 「19세기 말 충청도 提川鄉約과 향약에 서의 동학농민군 대응 양상」, 『중앙사론』 53.

18세기 초 황익재(黃翼再)의 진휼 활동과 순천 사창·향약의 운영 토론문

설현지(경북대)

이 논문은 18세기 순천의 지방관이었던 황익재의 사창, 진청, 향약 활동의 배경과 경과를 살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대기근을 겪으면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民苦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였고, 그 결과 사창과 향약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해되었던 황익재의 「사창절목」, 「향약절목」, 「진청절목」의 작성 배경과 황익재의 활동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공부가 부족하여 논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점과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1. 황익재에 주목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발표문에도 서술하셨지만 황익재는 18세기 지방관으로 순천지방에서 지방관으로 직접 사창과 향약을 설치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황익재의 연구는 한문학과 역사학에서 오랜 시간동안 연구되었고, 특히 사용하신 자료들은 연구자들이 한 번씩 사용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왜 발표자께서는 황익재를 다시 주목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17세기 재해와 기근에 대처하기 위해 사대부들은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이유태와 유형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창과 향약을 고을 단위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창과 향약은 17세기부터 사대부들이 주목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해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 사창과 향약은 ‘표리관계’를 띠었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소개해주시거나 왜 이 두 가지 제도가 표리관계였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논문의 주어가 ‘황익재’인지 ‘사창과 향약’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황익재가 주어라면 그가 다른 곳에서 지방관을 지낼 때 활동이나 그의 학맥, 성장 배경 등을 살피면서 사창과 향약을 실제로 시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사창과 향약이 주어라면 사창과 향약이 그동안 논의된 흐름과 그 사이에서 황익재의 사창과 향약이 어떤 위치를 노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사창과 향약 시행을 주장한 사람들은 지역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조선은 환곡과 같은 국가 중심의 구휼 체계로 귀결되었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사창제의 문제와 지역 단위의 사창, 향약 시행이 결과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5. 사창에 대한 연구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은 “사창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발표자께서 관에 진청이, 각 리에 사창이 있었다고 보았는데 각 리마다 사창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지도를 봤을 때, 고을별로 창고가 하나 있는데, 사창이나 진청이라고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창과 진청이 공통의 참고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기지방 입암촌계의 내용과 특징

권수용(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1. 입암향약의 역사
2. 입암계안의 내용
3. 입암계안의 성격
4. 입암촌계의 특징

1. 입암향약의 역사

입암(笠岩)은 본래 남원(南原)의 기지방(機池坊)에 해당한 지역으로, 갓모양의 바위가 있어 ‘갓바우’ 또는 ‘입암’이라 했다. 1872년에 작성된 『군현지도』(1872)의 남원부 지도에 따르면, 기지방에는 호촌, 고통, 입암, 서재, 옹촌, 매촌, 방촌의 마을이 속한 것으로 나와 있다. 대한 제국기에는 전라북도 남원군 기지면으로 개편되어 고통동, 옹정동, 입암동, 서동, 매촌, 방촌, 호산동의 7개 동리를 거느렸다. 1914년에 기지면은 금안면과 합쳐 금지면이 되었으며, 입암동은 현재의 입암리와 서매리로 분리되고, 옹정동 역시 옹정리와 입암리로 분리 개편되었다. 입암리는 1972년 입동(笠東)과 입서(笠西)로 분리되었고, 1995년에 남원 시·군이 통합되어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가 되었다.

입암(笠岩) 마을은 원래 마을 동쪽 두적(斗跡)이라는 삼밭자리(옹정역사이에 있었음)에 위치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 문(文), 지(池), 황(黃) 등의 성씨가 거주하다가 지금의 위치로 마을이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박(朴), 신(申), 안(安), 김(金), 엄(嚴), 배(裵), 방(房), 강(姜), 이(李), 심(沈), 유(柳), 임(林), 정(鄭), 정(丁), 권(權), 조(趙)씨 등의 여러 성씨가 정착하여 큰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기지입암향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1878년에 죽계(竹溪) 방사규(房士圭)가 쓴 <입암사실(笠巖事實)> 서문에 나와 있듯이, 즉 남원의 서쪽이자 비흥치의 동쪽에 월평(越坪)이라는 너른 들판이 있고, 월평 주변에 두지(斗址)라는 촌락이 있는데, 두지에서 이곳으로 거주를 옮겨 와 점차 마을을 이루게 되었고, 마을 남쪽에 암석이 하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름을 입암으로 짓게 된 것이다.

이곳에 살기 시작한 사람이 문(文)씨와 지(池)씨이고, 다음으로 살게 된 사람이 황(黃)씨와 박(朴)씨, 그리고 안(安)씨와 신(申)씨라고 하며, 이들이 이곳에 살면서 가르치고 깨우쳐 배움을 흥기시키고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은 지가 몇백 년이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기갑(己甲)의 흉년을 거치면서 마을이 사라졌다가 그 후 취락을 이루고 옛 제도를 복원하였다. 그리고 집집마다 나락 1석씩을 거두고 이것에 대해 이자를 불렸으며, 송계의 송추도 팔아서 재물로 만들어 동답(洞畓)을 구매하고, 그곳에서 해마다 세를 거두어 동중에서 사용하게 되었으

며, 이 등에 들어와 사는 사람에게는 신입전(新入錢)을 거두었다.

입암향약의 창설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현재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는 1795년에 작성된 「기지입암향약안(機池笠巖鄉約案)」이다. 그런데 <좌목>에는 사망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으니, 신광옥(申光玉)과 같은 사람은 1752년에 죽은 인물이다.(한미라) 또한 1833년에 작성된 「기지입암리계헌(機池笠巖里稷憲)」의 끝부분에 보면, 옹정 3년인 1725년에 동내(洞內)에서 보유했던 기물의 종류와 수 등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를 볼 때 입암향약이 시작된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1725년에는 입암향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암향약 자료는 입암리 입암마을 중 하나인 서촌(西村) 마을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 1994년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 벽장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총 6권으로, 「기지입암향약안(機池笠巖鄉約案)」(1795), 「기지입암리계헌(機池笠巖里稷憲)」(1833), 「서암계안(西巖稷案)」(1864), 「목청조목안(木廳條目案)」(1874), 「입암사실(笠巖事實)」(1878), 「기지방입암촌향약안(機池坊笠巖村鄉約案)」(1883) 등이다. 이밖에도 「기지방향약안(機池坊鄉約案)」이 전북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이것도 활용하였다.

2. 입암계안의 내용

「기지입암향약안(機池笠巖鄉約案)」은 을묘년(1795) 9월에 작성된 자료로, <서문(序文)>, <향약조례>, <명단> 등이 들어 있다. 서문은 찬술 일자나 찬자가 명시되지 않았고, 내용은 남전향약의 4개 덕목과 율곡의 향약조목을 취해 보면 풍속의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향약조례>는 벌(罰)에 대한 내용으로 벌을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끝에 ‘행사(行使)[서업]’이 있고, 각 장마다 관인이 찍혀있으며, <명단>에는 책자에 이름이 바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름 쪽지를 붙인 것으로, 방준우(房濬佑)·지종렴(池宗濂)·조한웅(趙漢雄) 등 모두 34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기지입암리계헌(機池笠巖里稷憲)」은 기사년(1833) 12월에 작성된 계안으로, <향약조례(鄉約條例)>, <동장의 추가조약>, <명단>, <1849년 2월 16일 완약(完約)>이 들어있고, 끝 표지장에 <옹정 3년 을사년(1725) 8월의 동내기물원수치부(洞內器物元數置付)>가 덧붙여 있다. 1795년의 문건과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며, 명단에 오른 인물이 대폭 늘어났는데, 대부분 1795년의 인물이 2~3명만 빼고 모두 들어 있다. 그래서 작성연대를 1833년으로 추정하였다. <옹정 3년 을사년(1725) 8월의 동내기물원수치부>는 뒷표지의 내면에 기록된 것으로, 동네 기물인 접시·대접·상 등의 수량을 적어놓았다.

「서암계안(西巖稷案)」은 1864년 7월에 작성된 계안으로, 지금까지의 계안과는 다른 점이 있으며, 1943년의 기록까지 들어 있다. 내용은 <서질계서(西秩契序)>, <조약(條約)>, <호수노명록(戶數奴名錄)>과 강신안, <서질목록기(西秩目錄記)>와 강신안, <서질호수기(西秩戶數記)>와 강신안, <무인년(1938) 1월 신설계(新設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1868년 12월에 훈학(訓學) 방사규(房士圭)가 썼고, <조약>은 3조목이 있는데, 효도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자는 집을 헐어 없애고 내보낼 것, 술주정을 하고 못된 행실을 부리며 서로 다투는 자는 관아에 고해 죄를 다스릴 것, 만약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질(秩)의 사람이 서로 구제하여 함께 지을 것 등의 내용이다. <호수노명록>에는 맛정월 등 44명의 이름이 올라 있으며, 이름 아래에는 몇 년월일에 돈 얼마를 내고 들어온 것 등을 표시하였다. 명단 다

음에는 강신(講信) 기록이 무술년(1898) 12월까지 붙어있다. 다음으로 <서질목록기(西秩目錄記)>는 이름만 적혀 있는데, 정례 등 27명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어서 강신안을 기록했는데, 기해년(1899) 12월 17일부터 임술년(1922) 1월 15일까지이다. 다음으로 <서질호수기(西秩戶數記)>에는 김화익 등 18명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성(姓)이 붙어 있다.

「목청조목안(木廳條目案)」도 이름이 생소한 것인데, 1874년 11월에 작성된 계안으로, 1874년 8월에 방사규(房在圭) 쓴 <서문>과 <약조> 6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 의하면, 목청(木廳)은 농가에서 크게 공이 있으니, 방천(防川)과 안산(案山)의 초목을 함부로 베는 것을 금하고 수호하면서 동산(洞山)의 개간한 땅에서는 세(稅)를 거둔 것으로 재물을 모아 동중(洞中)의 용도에 보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약조>는 앞의 3조목은 「서암계안(西巖契案)」에서의 <조약>과 비슷하며, 다만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자는 태형 30도(度)에 처한 후에 벌전(罰錢)으로 1냥을 징수한다는 등 벌전을 물리기로 한 것과 모임 일자를 11월 15일로 정한다는 내용 등이 더 들었음을 볼 수 있다. 목청장은 신경화(申敬化)이고, 공원은 안덕서와 양덕민이며, 각 장마다 관인이 찍혀있고, 끝에 남원부사 수결이 있다. 문서의 끝장에 작은 글씨로 부기된 기록이 덧붙여 있는데 바로 1889년 1월 28일에 작성한 <입암 목청답(木廳畓) 기록>으로, 모두 9마지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암사실(笠巖事實)」은 1878년 5월에 작성된 계 자료로, <입암사실(笠巖事實) 서문>, <동중권모조기(洞中勸募租記)>, <신입전기(新入錢記)>, <추입기(追入記)>, <입암동답기(笠巖洞畓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방사규(房在圭)가 썼으며, <동중권모조기>에는 신사년(1821)에 개안(改案)한 것으로 53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름 아래에 나락 1석을 낸 것이 기록되어 있다. <입암동답기>에는 입암에서 소유한 전답을 기록한 것으로, 반달평의 검자답 등 23곳 전답이름과 두락수 및 경작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전답은 68마지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지방입암촌향약안(機池坊笠巖村鄉約案)」은 계미년(1883) 11월에 작성된 문건으로, 방사규(房士圭)가 쓴 <서문>과 <향약조례>로 이루어져 있다. 향약조례는 1795년 「기지방입암향약안」이나 1833년 「기지방입암리계헌」에 나오는 향약조례와 거의 비슷하다. 즉 향약의 덕목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罰)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서 상벌은 태형 30도에 처한 후에 손도(損徒)하고, 중벌은 태형 20도(度)에 처하며, 하벌은 태형 10도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기지방향약안(機池坊鄉約案)」은 전북대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것으로, 기해년(1779, 1839?) 8월에 기지방(機池坊)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내용은 <향약조례(鄉約條例)>와 <약조>로 구성되어 있다. <향약조례>는 벌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상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태형 30대를 친 후 손도(損徒)하고, 중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태형 25대를 치며, 하벌은 태형 10대를 친다는 내용이다. 끝에는 ‘기해팔월일’이라는 연월과 남원부사의 서압이 붙어 있다. 이어서 약조 6조목 적혀 있는데,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리나 효열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다.

3. 입암계안의 성격

입암향약자료는 크게 2부류로 구별할 수 있으니, 첫째, 규약과 관련된 책자로, 「기지방입암향약안(機池笠巖鄉約案)」(1795)·「기지방입암리계헌(機池笠巖里契憲)」(1833)·「기지방입암촌향약안(機池坊笠巖村鄉約案)」(1883)을 들 수 있고, 이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목청조목안(木廳條目案)」

(1874)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 둘째, 재산 운용과 관련된 책자로, 「서암계안(西巖稷案)」(1864)과 「입암사실(笠巖事實)」(1878)을 들 수 있다.

1) 규약 내용

입암향약 규약에 관하여 살펴보면 각 책자마다 <향약조례>가 들어있으니, 그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향약절목의 별목 비교

	기지방향약안	기지입암향약안 (1795)	기지입암리계헌 (1833)	기지방입암촌향약 안(1883)
상 별	不順父母者 兄弟不和者 家道悖亂者 毆打長老者 守身孀婦誘脅汗奸者 盜竊他人物者 侵耕他人田界者 止接流來荒唐者 正妻疎薄者	不孝父母者 不和兄弟者 不睦親戚者 疎薄正妻者 不恭長老者 守節貞女誘脅汗奸者 生慾他人財物者	不孝父母者 不和兄弟者 家道悖亂者 毆打長老者 守身孀婦誘脅汗奸者 竊盜他人物者 侵耕他人田界者 止接流來荒唐者	不孝父母者 不和兄弟者 不睦親戚者 疎薄正妻者 不恭長老者 守節貞女誘脅汗奸者 生慾他人財物者
중 별	親戚不睦者 隣里不和者 男女無別者 打傷儕輩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不有執網不從公令者 接人戶下不服官役者 恃強凌弱作弊閭里者 放牛馬田間害人禾穀者 下徒之不恭於上徒者 公議循私者 公私聚會非是官政者 造言搆虛陷人罪累者 不謹租賦圖免徭役者 肆酒作孽者 受官差任憑公營私者	隣里不和者 農業不務者 蔑視儕輩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酗酒凌辱者 不有執網不從公令者 接人戶不服官役者 恃強凌弱作弊閭里者 止接流來荒唐者 下徒之不恭於上徒者 村後禁養處生慾作害者 侵耕他人田畝境界者 無端造言亂民者 放牛馬害穀者	親戚不睦者 隣里不和者 疎薄正妻者 不恭長老者 守節貞女誘脅汗奸者 生慾他人財物者 打傷儕輩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不有執網不從公令者 接人戶不服官役者 恃強凌弱作弊閭里者 放牛馬田間害人禾穀者 下徒之不恭於上徒者 公議循私者	隣里不和者 農業不務者 蔑視儕輩者 患難力及坐視不顧者 酗酒凌辱者 不有執網不從公令者 接人戶不服官役者 恃強凌弱作弊閭里者 止接流來荒唐者, 村後禁養處生慾作害者 下徒之不恭於上徒者 侵耕他人田畝境界者 無端造言亂民者 放牛馬害穀者
하 별	公會晚到者 無故不參公會者 言辭不恭者 喧譁失禮者	公會晚到者 公議循私者 言辭不恭者 坐次失禮者	公會晚到者 言辭不恭者 喧譁失禮者	公會晚到者 公議循私者 言辭不恭者 坐次失禮者

	기지방향약안	기지입암향약안 (1795)	기지입암리계현 (1833)	기지방입암촌향약 안(1883)
상벌	決答三十度後損徒事	決答三十度後損徒事	決答三十度後損徒事	決答三十度後損徒事
중벌	決答二十五度	決答二十度	決答三十度事	決答二十度
하벌	決答十度	決答十度	決答十度事	決答十度

이상에서 보듯이 기지방향약안이나 여타 입암향약안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벌과 중벌의 내용이 서로 드러냄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광주향약이나 퇴계의 예안향약 등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이한 것은 중벌 중에 ‘소를 풀어두어서 곡식에 해를 입힌 자’를 벌한다는 것은 농촌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상중하벌의 조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광주향약 등과는 달리 상벌은 태 30대를 친 후에 손도(損徒)를 하고, 중벌은 태 25대 내지 20대를 치며, 하벌은 태 10대를 치는 것으로 통일하고 있다. 다만 1833년 자료에서는 중벌에 태 30대를 친다고 했는데 20대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의 <향약조례> 다음에는 <약조>가 덧붙여 있는데, 대개는 초상을 당한 사람이나 병으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1833년 자료에서는 다른 책자 속에 들어있지 않은 약조가 들어있으니, 상여와 차일을 빌려줄 때 1냥씩을 받고, 접시나 대접 등을 비계원에게 빌려줄 때는 한 죽에 한 개씩을 더 받도록 하며, 동네에서 별좌(別座)인 장교(將校)와 교생(校生)은 매달 계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술과 안주를 바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돈 5전을 정식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편 「목청조목안(木廳條目案)」은 ‘목청(木廳)’이란 제명이 특이한데, 방천(防川)에서 풀을 베고 안산(案山)에서 땀감을 베는 것을 금하고 동산(洞山)을 개간한 땅에서는 세(稅)를 거둔다는 내용이다. 계의 목적을 보면 목청계가 곧 송계(松契)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약조> 6 조목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효도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며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월경(越境)으로 내친다.
 1. 만약 질병으로 농사를 폐한 자가 있으면 각기 농기구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어 준다.
 1. 술주정을 하고 못된 행실을 하는 자,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자는 태형 30도(度)에 처한 후에 벌전(罰錢)으로 1냥을 징수한다.
 1. 방천과 안산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금함을 범하는 자는 벌전으로 1냥을 징수한다.
 1. 들판 전답의 곡식을 밤을 틈타 몰래 베어다 주막에서 술로 바꾸어 먹는 자는 벌전으로 20냥을 물린 뒤 집을 헐고 내친다.
 1. 주인 없는 옛 무덤이라도 소나 말이 사초를 훼손시키는 것을 금한다.
- 도회(都會) 일자는 11월 15일이다.

목청계의 약조는 앞서 살핀 책자의 향약조례와는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별목에 해당되며,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산 운용

재산 운용 등과 관련된 책자로 「서암계안(西巖契案)」(1864)과 「입암사실(笠巖事實)」(1878)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서암계안(西巖稷案)」은 1864년 7월에 작성된 계안으로, 1943년의 기록까지 들어 있다. 내용은 <서질계서(西秩契序)>, <조약(條約)>, <호수노명록(戶數奴名錄)>과 강신안, <서질목록기(西秩目錄記)>와 강신안, <서질호수기(西秩戶數記)>와 강신안, <무인년(1938) 1월 신설계(新設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1868년 12월에 훈학(訓學) 방사규(房士圭)가 쓴 것이고, <조약>은 3조목이 있는데, 효도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자는 집을 헐어 없애고 내보낼 것, 술주정을 하고 못된 행실을 부리며 서로 다투는 자는 관아에 고해 죄를 다스릴 것, 만약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질(秩)의 사람이 서로 구제하여 함께 지을 것 등의 내용이다. <호수노명록>에는 맛정월, 일단 등 44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름 아래에는 몇 년월일에 돈 얼마를 내고 들어온 것 등을 표시하였다. 기록이 정확한 사람의 경우 기사년 12월에 들어온 사람이 4명이고 돈 1냥 3전 3푼씩을 냈고, 경오년 12월에는 2명이 들어왔는데 돈은 1냥 8전을 냈으며, 의만은 병인년 1월 15일에 돈 2전 6푼을 내고 신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명단 다음에는 <강신안(講信案)>으로 보이는데, 갑자년(1864) 5월 사주연(社酒宴)의 여전(餘錢)이 2냥 9전이고, 6월의 양운초(秧芸草) 여전이 3전 5푼이어서 합전 3냥 3전 5푼임을 적었다. 이때 유사는 필금으로, 3냥 3전 5푼을 가져가 이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을축 정월 15일의 강신에서는 추봉(秋捧)한 본리(本利)가 3냥 9전 5푼인데, 유사인 소운태, 맛정월, 소갑생, 소운태가 나누어서 가져갔고, 을축년 윤5월 15일에는 사농주연(社農酒宴)을 하고 남은 여전이 1냥 1전이고, 잉어값이 8전이어서 합전 1냥 9전이고 이자 2전을 소복만과 흥서가 나누어 가져갔다.

병인년 1월 15일 강신 기록 다음으로 5~6장이 잘려나가고 없는데, 어느 누군가 고의적으로 잘라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임신년 12월 27일의 강신기록이 있는데, 이때 추봉한 본리는 84냥 3전 7푼이나 된다. 그래서 이때 유사는 18명이나 된다. 다음으로 계유년 12월 27일의 강신 기록이 있는데, 이때 추봉의 본리는 96냥 1푼이고 실여전은 81냥 6전 5푼인데 이때 유사는 19명이다.

이후의 강신은 갑술년 12월 27일, 을해년 12월 25일, 병자년 12월 27일, 정축년 12월 15일, 무인년 12월 15일, 기묘년 12월 17일, 경진년 12월 17일, 신사년 12월 17일, 임오년 2월 17일, 계미년 2월 17일, 갑신년 2월 17일, 을유년 2월 17일, 병술년 2월 17일, 정해년 2월 17일, 무자년 12월 20일, 기축년 2월 17일, 경인년 2월 17일, 임진년 12월 20일, 신묘년 2월 17일, 임진년 12월 20일, 계사년 2월 17일, 갑오년 2월 17일, 병신년 2월 17일, 정유년 12월 25일, 무술년 12월 20일 기록으로 끝난다.

무술년 12월 20일에 강신한 내용을 보면 추봉한 본리가 77냥 8전 8푼인데, 69냥 6전을 각원 24명에게 분급해주었고, 3냥 3전은 계획 때 주효값으로 냈으며, 2냥 3전 8푼은 영구히 감하여서 남은 돈은 2냥 1전 3푼임을 적었다. 이어서 기록이 있는데, 무술년 12월에 삼질계(三秩稷) 돈 50냥을 나누고 27냥은 27호(戶)에 분급했으며, 5냥은 신기질(新基秩)에 출급하였고, 본 계전 2냥 1전 3푼은 삼질계전으로 나누어 쓰고, 남은 돈 17냥 5전은 들여와서 합전 19냥 6전 3푼이며, 계획일자는 매년 17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서질목록기(西秩目錄記)>는 하민 이름만 적혀 있는데, 정례, 화필, 봉선, 운금, 중일향, 소토금, 운울, 금옥, 몽섬, 차성매, 운태, 수남, 말매, 연금, 필금, 토금, 운금, 복만, 말복매, 갑생, 복매, 응오, 운매, 행심, 의만, 갑창, 말임 등 27명의 이름이다. 즉 서질은 27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끝에 원계원은 27명이고, 유사는 금옥과 필금으로, 각자 1냥 1전 3푼과 17냥 5전을 가져가 식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질목록기> 다음에도 계속해서 강신안을 기록했는데, 기해년(1899) 12월 17일, 경자년 12월 21일, 신축년 12월 25일, 임인년 12월 25일, 갑진년 12월 17일, 을사년 12월 27일, 병오년 12월 27일, 정미년 12월 27일, 기유 12월 27일, 경술 12월 27일, 신해년 12월 17일, 임자년 12월 17일, 계축년 12월 27일, 갑인년 12월 20일, 을묘년 12월 20일, 병진년 12월 20일, 정사년 12월 20일, 무오년 12월 20일, 기미년 12월 20일, 경신년 12월 20일, 신유년 12월 20일, 임술년 1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임인년 12월 25일 강신안에는 인명안도 붙어 있는데, 모두 25명과 신입 2명의 이름이 들어 있다. 이름은 '정례, 몽득, 봉선, 운금, 차일향, 운울, 금옥, 몽울, 차성매, 운태, 순남, 맛매, 연금, 필금, 토금, 운금, 복만, 갑생, 소갑생, 복매, 정매, 소행심, 행심, 의만, 용단, 양태숙, 박우홍' 등이다.

그리고 무신년(1908)의 강신부터는 계원의 이름자에 성씨가 함께 붙어서 나온다. 그리하여 뒤에 나온 <서질호수기(西秩戶數記)>에는 '김화익, 김치홍, 박춘원, 방정원, 신동협, 방철원, 신태균, 신서익, 신문화, 류정만, 박재수, 신화국, 방영원, 신치명, 방중삼, 신갑균, 신문택, 박소삼' 등 18명의 이름이 올라 있고, 인명의 위아래에 부기한 내용이 있는데, "기사년 신입 방윤찬 1냥 5전, 황영주 1냥 5전, 박윤화 1냥 5전, 신낙균 1냥 5전, 을축년 1월 15일 신입 방도연, 박준오"라는 내용과 대입(代入)한 사람의 이름도 적고 있는데, 즉 박재수의 대입은 방명원, 박소삼의 대입은 김철상으로, 성이 다른 것으로 보아 이때 대입은 한 명의 계원이 빠지고 다른 계원으로 수를 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의 이름과 뒤의 성씨가 있는 이름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어서 강신안으로는 갑자년 12월 20일, 을축년 12월 20일, 병인년 12월 20일, 정묘년 12월 20일, 무진년 12월 20일, 기사년 12월 20일, 경오년 12월 20일, 신미년 12월 22일, 계유년 1월 20일, 갑술년 1월 19일, 갑술년 12월 28일, 을해년 12월 28일, 병자년 12월 28일, 정축년(1937) 12월 28일까지의 기록이 있다.

다음으로는 <무인년(1938) 1월 신설계(新設稷)>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두원, 방응화, 지종문, 방길원, 신현균, 방정원, 박정범, 방장원, 신낙균, 신태균, 신현룡, 신재균, 신문화, 방명원, 신용환, 방영원, 신평균, 방한원, 방극성, 신갑균, 방근운, 황길삼, 신현귀 등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끝에 '각 40전씩' 회비를 내어서 합계 9엔 20전임을 적었다.

무인년 1월 20일의 유사는 신갑균, 방장원, 신문화, 방한원으로, 약 5엔씩 나누어 식리했다. 이후부터는 국한문 혼용으로 강신안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묘년 1월 9일, 경진년 1월 15일, 소화16년 12월 28일, 소화18년(1943) 12월 28일까지의 기록으로 끝난다. 마지막의 기록을 보면 유래전 병본리 5원 43전 내에서 40전을 함정(檻亭) 대지세금으로 내고, 실재전은 5원 3전인데, 이때 유사 방경원에게 5원 3전을 유치함, 돈 1엔을 대목 식비로 주어 실재금은 4엔 3전인데 유사 방경원에게 유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암사실(笠巖事實)」을 보면, 신사년(1821)에 개안(改案)하고 계원 53명에게 각각 나락 1석씩을 거두었고, 이것으로 이식을 하여 <입암동답기>에 기록된 것처럼 반달평의 검자답 등 23곳에 68마지기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목청답(木廳畓)과 지명이 같은 곳이 있는데,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또한 신입전(新入錢)을 거두었는데, 1857년 김성모(金聖模) 15냥부터 시작하여 1냥을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28년 안계선(安桂先)은 50냥을 내기도 했다. 「서암계안(西巖稷案)」에서의 신입전보다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입암사실 서문>은 1878년에 방사규(房在圭) 쓴 것인데, 앞의 1874년의 <목청실기(目廳實記)> 서문을 쓴 사람과 동일하다. 기갑의 흉년을 거치면서 마을이 사라졌다가 그 후 취락을 이루고 옛 제도를 복원하였고, 집집마다 나락 1석씩을 거두어 이것을 본자로 하여 이식해가고

송계의 송추도 팔아서 재물을 마련한 뒤 동답(洞畓)을 구입했으며, 또한 신입회원에게 신입전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동중권모조기>는 가경(嘉慶) 신사년(1821)에 개안(改案)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가경 연間は 1796년부터 1820년에 해당하니, 신사년에 해당한 연도는 없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1821년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는 방준우(房俊佑)부터 설덕룡(薛德龍)까지 53명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름 아래에 나락 1석씩을 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3명은 1석이 안 되는 나락을 냈다. 19명은 무인년(1818)에 냈다고 하고, 34명은 연도표기가 없지만 1821년 개안 때 낸 사람으로 보이며, 이중 최동석(崔東錫)은 무인년과 개안 때 1석씩을 냈다. 이 사람들은 1833년 기지입암리계현에 들어있는 명단 89명과 비교했을 때 53명중 6명만 빠지고 47명이 들어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어져 있는 <신입전기>에는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 명단과 돈의 액수를 적은 것으로, 김성모(金聖模) 15냥부터 장명숙(張明淑) 1냥까지 16명이 적혀 있는데, 앞의 2명은 정사년(1857)에 신입하였고, 9명은 병자년(1876)에 신입하였으며, 1명은 무인년(1878)에, 4명은 기묘년(1879)에 신입하였다. 다음으로 갑신년(1884년) 4월부터 투입한 사람을 적은 투입기에는 엄유복(嚴裕福) 5냥부터 안계선(安桂先) 50냥까지 56명이 올라 있는데, 무진년(1928)까지의 투입 기록이고, 여기에서 투입비로 받은 돈은 모두 240냥이다. 그것을 연도별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1857년 金聖模 15냥, 金麟模 5냥
- 1876년 宋金巖 1냥, 朴光濟 2냥, 金成淑 2냥, 李茂春 3냥, 朴龍大 14냥, 朴興大 3냥, 黃權三 1냥, 金應甫 1냥, 魯振元 1냥
- 1878년 朴應五 10냥
- 1879년 盧明淑 17냥, 金海桃 1냥, 金唐駱 1냥, 張明淑 1냥
- 1884년 嚴裕福 5냥, 姜致文 5냥, 金萬益·金在天·金振汝 8냥, 梁海壽 3냥, 梁應三 2냥, 薛乃洪 2냥, 金箕聖 2냥, 文在周 4냥, 金聖烈 3냥, 徐景善 1냥, 金業遜 4냥, 金洪瑞 1냥, 金煥玉·金贊景 3냥, 金明光 4냥
- 1886년 趙道業 3냥
- 1887년 鄭卷募 등 8냥, 黃允執 2냥, 徐洛元 2냥
- 1894년 安永必 3냥, 申道重 15냥, 申元昌 6냥, 張瑞伯 3냥, 朴龍挾 3냥, 李文龍 3냥, 李春嫻 2냥, 宋應集 3냥, 金仁五 3냥, 徐杏信 2냥, 朴順吉 2냥, 秋相宗 1냥
- 1906년 裴文五 40냥
- 1907년 柳春化 15냥, 朴大鎭 5냥, 史明國 5냥, 安錫祚 5냥
- 1904년 鄭國昌 35냥, 魯明七 8냥
- 1928년 陳善仲 10냥, 裴永周 10냥, 宋致玉 5냥, 陳斗三 10냥, 柳在化 25냥, 安昌燮 10냥, 安奉燮 10냥, 朴奉烈 25냥, 金聖禹 50냥, 李裕錫 25냥, 僕聖圭 5냥, 金海云 5냥, 安桂先 50냥

이상에서 여타 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입의 경우에는 입회비가 1~2냥이었고, 신입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달라서 8냥에서 35냥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입암사실(笠巖事實)」 끝에는 <입암동답기>가 붙어 있는데, 입암에서 소유한 전답을 기록한 것으로, 반달평의 검자답 등 23곳 전답이름과 두락수 및 경작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전답

은 68두락 이상이 된다. 이것은 앞서 살핀 1874년 「목청조목안(木廳條目案)」(1874)의 <입암 목청답(木廳畓) 기록(1889년 1월 28일)>과 비교하면 9두락에서 엄청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입암동답기>

- 반달坪(班達坪) 출(出)자답 4두락 복수 박여현(朴汝賢)
- 곤(崑)자답 2두락 복수 신경화(申敬化)
- 검(劔)자답 4두락 복수 안경삼(安敬三)
- 정구천坪(亭龜川坪) 야(夜)자답 4두락 복수 안영필(安永弼)·김경백(金敬白)
- 기지坪(機池坪) 강(薑)자답 4두락 복수 박국현(朴國賢)
- 입암坪(笠巖坪) 개(芥)자답 2두락 복수 김명광(金明光)
- 동당坪(東堂坪) 채(菜)자면전 1두5승락 지정보(池正甫)
- 안치坪(雁峙坪) 광(光)자면전 1두5승락 신도엽(申道燁)
- 봉기坪(鳳岐坪) 장(藏)자답 5두락 복수 박창동(朴昌同)
- 곤(崑)자답 2두락 복수 식주인(食主人)
- 검(劔)자답 3두락 복수 동장(洞長)
- 협坪(挾坪) 강(崗)자답 3두락 복수 식주인(食主人)
- 신교坪(新橋坪) 곤(崑)자답 5두락 복수 연분답(年分畓)
- 봉기坪(鳳岐坪) 곤(崑)자답 3두락 복수 목청(木廳)
- 반달坪(班達坪) 곤(崑)자답 3두락 복수 안신우(安信禹)
- 강(崗)자답 2두7승락 복수 13부 방덕칠(房德七)
- 방촌배야坪(芳村背夜坪) 공(拱)자답 4두락 복수 신도엽(申道燁)
- 개금坪(開金坪) 중(重)자답 5두락 복수 신락원(申洛元)
- 봉기坪(鳳岐坪) 곤(崑)자답 2두락 복수 8부3속
- 원야미坪(元夜味坪) 사(師)자답 2두락 복수 신세관(申細寬)
- 반월坪(半月坪) 검(劔)자면전 1두5승락 복수 장명숙(張明淑)
- 기지坪(機池坪) 우(芋)자답 2두락 복수 안광국(安光國)
- 정구천(亭龜川) 야(夜)자답 3두락 복수 목청(木廳)

4. 입암촌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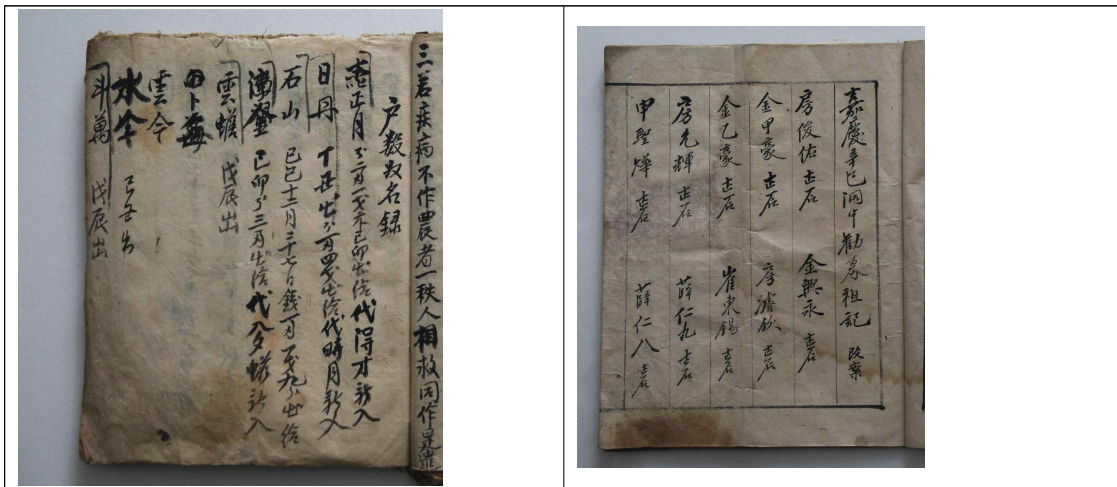
이상에서 재산과 관련된 「서암계안(西巖稷案)」(1864)과 「입암사실(笠巖事實)」(1878)을 살펴 보았는데 두 책자는 구성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암리에 두 층위의 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이 상하 합계 형식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에 비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1) 구성원 비교

먼저 두 책자에 기록된 인물의 일단을 비교해 보겠다.

표4. 서암계안(西巖稷案)과 입암사실(笠巖事實)의 인명 비교

<p>서암계안(西巖稷案) <호수노명록>(1864) 맛정일, 일단, 석산, 만금, 운섬, 복매, 운금, 수금, 두만, 소운태, 운태, 순남, 월단, 소한, 맛매, 필금, 토금, 운금, 운매, 몽갑, 춘단, 몽섬, 대맛립, 소일단, 소동금, 소몽례, 운월, 의만, 갑창, 도생, 운산, 소두재, 빙해성, 차효금, 후덕, 중화, 월춘, 흥서, 의만, 시월, 정례, 갑봉, 이금, 연금</p> <p><서질호수기(西秩戶數記)>(1908) 김화익, 김치홍, 박춘원, 방정원, 신동협, 방철원, 신태균, 신서익, 신문화, 류정만, 박재수, 신화국, 방영원, 신치명, 방중삼, 신갑균, 신문택, 박소삼 18명</p>	<p>입암사실(笠巖事實) <동중권모조기>(1821) 金甲豪, 金大聲, 金大永, 金德重, 金得天, 金尙晚, 金乙豪, 金一聲, 金重赫, 金振聲, 金兌益, 金興永, 林時萬, 牟秀萬, 朴己里, 朴己星, 朴己孫, 朴豆重, 朴世平, 朴順才, 朴重直, 朴春長, 朴春興, 朴致東, 房善玄, 房時玄, 房允輝, 房濬佑, 房濬欽, 房泰文, 徐得金, 徐漢丹, 薛德龍, 薛德豪, 薛時運, 薛仁九, 薛仁三, 薛仁八, 申大有, 申麗輝, 申聖燁, 申聖兌, 申天貴, 安世豪, 尹大機, 張世良, 池萬湫, 池萬興, 池仁同, 崔東錫(2), 崔允奉, 黃允輝</p>
--	--



즉 입암리는 향약 시행 단위 중 가장 아래 층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하계안(?)이 따로 존재한다.

이름에서 ‘서암(西巖)’ 또는 ‘서질(西秩)’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하민(?) 위주로 만든 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책자는 1권이지만 내용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가 4개 정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계원은 대략 25~27명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

표5. 서암계안(西巖稷案) 내의 인명 비교

戶數奴名錄	西秩目錄記	西秩戶數記(1908)	新設稷(1938)
맛정일, 일단, 석산, 만금, 운섬, 복매, 운금, 수금, 두만, 소운	정례, 화필, 봉선, 운금, 중일향, 소토금, 운을, 금옥, 몽섬, 차	김화익, 김치홍, 박춘원, 방정원, 신동협, 방철원, 신태균, 신서	지두원, 방응화, 지종문, 방길원, 신헌균, 방정원, 박정범, 방장

태, 운태, 순남, 월단, 소한, 맛매, 필금, 토금, 운금, 운매, 몽갑, 춘단, 몽섬, 대맛립, 소일단, 소동금, 소몽례, 운월, 의만, 갑창, 도생, 운산, 소두재, 빙해성, 차효금, 후덕, 중화, 월춘, 흥서, 의만, 시월, 정례, 갑봉, 이금, 연금 등 44명	성매, 운태, 수남, 말매, 연금, 필금, 토금, 운금, 복만, 말복매, 갑생, 복매, 응오, 운매, 행심, 의만, 갑창, 말임 등 27명	익, 신문화, 류정만, 박재수, 신화국, 방영원, 신치명, 방중삼, 신갑균, 신문택, 박소삼 등 18명	원, 신낙균, 신태균, 신현룡, 신재균, 신문화, 방명원, 신용환, 방영원, 신평근, 방한원, 방극성, 신갑균, 방근운, 황길삼, 신현귀 등 23명
--	---	---	--

위 표를 살펴보면, <호수노명기>와 <서질목록기>에 올라있는 사람은 44명에서 27명으로 줄긴했어도 중복되는 인물이 많아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계로 보인다. 그리고 성이 붙은 이름의 <서질호수기>와 <신설계>는 중복되는 인물이 몇 명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연장선상에 있는 계가 아닌가 한다.

서암계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름 표기이다. 시작에는 성이 없는 이름만 적다가 임인년(1902) 강신안부터 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즉 유사가 복만과 신사윤이다. 그런데 이해 강신안 뒤에 바로 25명(이름만)이 올라있고, 양태숙과 박의흥이 아랫단에 적혀 있으며, 신입으로 신문택이 적혀 있다. 갑진년(1904) 12월 17일 강신에서 유사는 김복만인데, 25명의 이름속에 들어있는 복만과 같은 인물로 보인다. 의만의 이름은 정미년(1908)까지 등장하고 있다. 1909년부터는 성이 붙은 이름만 등장한다.

2) 남은 의문

2023년에는 향약자료집-남원향약1에 원동향약과 입암향약을 실었다. 원동은 반촌에 해당하고 입암은 민촌에 해당한다. 또한 원동향약은 동계(洞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입암향약은 촌계(村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 다 동리를 벗어나지 않은 극히 좁은 대상이다. 그러나 원동향약은 상층민 주도의 상하합계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볼 수 있고, 입암향약은 하층민의 조직인 촌계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하층민이 주도한 촌계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입암촌계의 경우 범위는 굉장히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이 다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참여인물은 50명 내외였을 것이고, 서질계의 경우 44명으로 시작을 했다.

입암리의 경우 동촌과 서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료가 나온 곳은 서촌마을이다. 서촌과 동촌은 사람이 섞여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계안을 작성하거나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关西古有青首

新指总本村分坎松隆西至

上西等樑余付江看海下

上西等大柱入入董村下

上西等系大柱等付海下

上上西等系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系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上三西等大柱等付海下

有句 及甲到西等下也

仅慈隆西也

顿重谷西等也

甲昌接西也

顿男伍西也

仲化叁西也

云太伍西也

小四片伍西也

中身才叁西也

差每叁西也

云每伍西也

云每伍西也

云每伍西也

남원 기지방 입암촌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최영희(전남대학교)

1. 원동은 반촌에 해당하고 입암은 민촌에 해당한다. 또한 원동향약은 동계(洞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입암향약은 촌계(村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원동향약과 입암향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서암계안에 오른 인물이 처음에는 이름만 적다가 나중에는 성과 이름이 함께 적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에 노비제도가 없어진 시기를 이때로 보아도 될런지요? 그리고 이름만 있던 사람이 성을 갖게 되었을 때의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3. 목청조목안에서 목청이란 말이 생소한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4. 계조직의 경우 현재에 와서는 형태를 달리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입암리의 경우에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